

# 朝鮮中期 鍼醫의 활동과 李馨益의 燔鍼術

金 勳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 Abstract

*The Activities of Acupuncture Specialists during the mid-Chosun Dynasty and Lee Hyung Ik's BunChimSool (Burning Needle Technique)*

Kim Hun

*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i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contemplate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acupuncture specialists and the social status of doctors including acupuncture specialists, by examining their activities of in the times of SunJo, GwangHaeGun, and InJo through the chronicles of Chosun Dynasty's Official Records. In addition, the meaning of Lee Hyung Ik's BunChimSool, which was even referred to as 'peculiar', and what diseases were meant to be cured by it were looked into.*

## I. 들어가는 글

조선시대 중기는 한국의학사에 있어 鍼灸學이 매우 발달한 시대로 말해진다<sup>1)</sup>. 특히 許浚의 『東醫寶鑑·鍼灸篇』과 許任의 『鍼灸經驗方』, 그리고 舍巖道人的 舍巖鍼法 등은

이 시대 침구학 발달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朝鮮王朝實錄』에서도 조선중기부터 鍼醫를 별도로 언급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가운데 仁祖代의 李馨益은 당시의 상황 하에 독특한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燔鍼術을 구가했었는데, 『仁祖實錄』중 醫官으로서 가장 빈번한 출현 횟수를 남긴다.

본고에서는 宣祖, 光海君, 仁祖代의 鍼醫들의 활동을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서 鍼醫의 출현배경과 鍼醫를 포함한 의원들의 당시의 사회적 위상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괴이하다’라고까지 언급된 李馨益의 燔鍼術이 어떤 치료법을 의미하며 무슨 병을 치료하고자 한 것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鍼醫의 구분과 출현배경

### 1. 鍼醫와 藥醫의 구분

『朝鮮王朝實錄』의 기록 가운데 鍼醫에 대한 언급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선조 19년이다<sup>3)</sup>. 이때의 기록을 보면 鍼醫로 거론된 오변(吳忭)이 어의들과 함께 대전에 들어와 중전의 咽喉病에 침을 놓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실록에는 鍼術에 능한 의원들을 별도로 鍼醫라 구분하여 지칭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미 藥醫와 鍼醫의 구분이 일반화되어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許浚도 宣祖의 편두통 증세로 인한 하문에 스스로 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고 말하면서 鍼醫인 許任에게 맡겨 침을 맞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許浚은 藥醫였던 것이다.

1) 金洪均 등은 「朝鮮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에서 金斗鍾의 『韓國醫學史』가 太祖에서 哲宗까지 近世醫學으로 함께 묶여 기술된 것을 植民史觀에 입각한 시대구분으로 비판하였다. 저자는 民族史觀이나 實證科學의 입장에서 볼 때 朝鮮中期는 16세기 중엽 明宗부터 18세기말의 正祖까지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朝鮮中期 의학의 특징으로 鍼灸學의 발달을 꼽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戰後에 軍陣醫學으로서의 침구술이 신속하고 실용적 가치를 발휘하여 왕실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성행한 것을 들었다. (金洪均·朴贊國, 朝鮮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권5, 1991.)

2) 許任의 『鍼灸經驗方』은 종래의 鍼灸書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편술된 것이며, 특히 그의 補瀉法은 침구술의 하나의 독자적 분야를 개척하였다고 볼 수 있다. 舍巖道人的 舍巖鍼法도 당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前人未踏의 독창적 鍼法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반해 許浚의 『東醫寶鑑·鍼灸篇』은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朴贊國은 그의 논문에서 “『鍼灸篇』이 책의 말미에 있고 各篇의 病證치료에 治療穴을 附記하고 있으나 대단치 못하다. 『鍼灸篇』의 주된 내용이 단순히 經絡이 흐르는 위치와 鍼穴의 위치소개에 奇經八脈·五俞穴 등 침구에 관한 내용을 약간 덧붙이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朴贊國, 東洋醫學 眞面目 못 보여줬다, 大韓原典醫史學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권5, 1991, p. 11.)

3) “오시(午時)에 중전의 인후증(咽喉症)이 위중하자, 의약(議藥)할 일로 어의(御醫) 모두를 대전(大殿)에 불러오라 명하였는데, 침의(鍼醫) 오변(吳忭)도 들어왔다. 약방 제소(藥房提調)가 차비문(差備門) 밖에 와서 문안하자,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 19년 10월 1일)

“침의(鍼醫)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소신(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許任)도 평소에 말하기를 ‘경맥(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선조 37년 9월 23일)

선조 39년의 기록에도 선조가 자신의 耳鳴症 치료를 鍼醫에게 맡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전담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귓속이 크게 울리니 침을 맞을 때 한꺼번에 맞고 싶다. 혈(穴)을 의논하는 일은 침의(鍼醫)가 전담해서 하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일은 의논이 많다. 만약 침의가 간섭을 받아 그 기술을 모두 발휘하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테니, 약방은 알아서 하라.” (선조 39년 4월 25일)

같은 해 10월의 기록에도 倭의 회답사로 떠나는 여우길(李汝吉)이 使行에 동반할 鍼醫와 藥醫의 선발을 요청하면서, 鍼醫와 藥醫의 구분을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鍼醫와 藥醫는 극진히 가려야 할 듯합니다. 한 관사에서 두 사람을 함께 데려가기 어렵다면, 鍼醫는 중요하므로 박인전을 계청한 대로 데려가고 藥醫는 또한 惠民甞를 시켜 관례에 따르지 말고 극진히 가려서 차정(差定)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선조 39년 10월 16일)

이로 보건대 朝鮮中期에 들어와 鍼醫와 藥醫의 구분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朝鮮時代에 鍼灸專門醫의 양성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15년 6월 典醫鑑提調 黃子厚의 건의에 의해 최초로 ‘鍼灸專門法’이 세워지게 되면서 鍼灸醫들이 양성되었고, 세종 20년 3월에 이르러 매년 鍼灸專門生 3인을 사용하여 三醫司에 1명씩 배치하게 한다. 이후 세종 24년 2월에 별도로 鍼灸專門生을 試取하는 것을 폐지하였다가, 端宗 즉위년 5월에 任元潛의 건의로 다시 설치된다. 세조 4년에 와서는 분과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鍼灸 이외에 專門科를 더 나누고 의학교육을 하게 되나, 2년 뒤에는 의원 取才時 專門別로 나누어 하지 말 것을 지시한다. 그러나 다른 분과와 달리 鍼灸醫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성종 3년 3월에 다시 鍼灸專門法이 부활·설치되고 鍼灸醫가 양성된다<sup>4)</sup>.

조선의 국가제도는 成宗代 『經國大典』이 완성됨으로써 정비되었는데, 『經國大典』 안에 醫科取才의 내용을 살펴보면 醫學科와 鍼灸學科가 나누어져 실시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 鍼灸學의 取才科目으로는 『纂圖脈』, 『和劑指南』, 『銅人經』 등을 암송하게 하였고, 『直指脈』, 『鍼經指南』, 『子午流注』, 『玉龍歌』, 『資生經』, 『外科精要』, 『十四經發揮』, 『鍼經摘英集』 등은 책을 보면서 시험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臨文시험을 치게 하였다<sup>5)</sup>.

朝鮮初期에 鍼灸專門制度가 설치와 폐지를 반복하게 된 이유를 孫弘烈은 폐지 당시 분과별 전문교육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혹은 鍼灸만으로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없어 기성의 의원들에게 鍼灸術을 아울러 익히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sup>6)</sup>.

이렇게 開國初부터 鍼灸는 별도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藥을 주로 다루는 藥醫와는 구별되게 鍼醫가 따로 양성되고 활동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鍼과 藥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의원, 즉 藥醫가 鍼을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그러한 職分上의 엄격한 역할분리에 대해 거론되어 나오는 바도 없으며, 『經國大典』 안에 일반의원의 취재과목으로 침구관련 문헌인 『纂圖脈』, 『銅人經』, 『資生經』 등이 나오기 때문이다<sup>7)</sup>. 즉, 藥을 주로 다루는 일반의원들도 鍼術을 익히게 한 것이다.

## 2. 鍼醫 출현의 배경

이렇게 엄격한 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鍼灸는 그 나름대로의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는데, 조선중기에 이르러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실록의 기록 가운데 鍼醫가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은 선조 19년이며, 이후 기록에 계속해서 여러 鍼醫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그 활동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鍼醫와 藥醫의 구별이 조선중기에 들어와 일반화되고 관행화될 수 있었던 것은 鍼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역할증대가 그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당시에 鍼灸에 대한 수요와 그 역할이 확대되었던 원인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기를 비롯한 피부질환의 치료목적일 수 있다. 종기는 조선조 역대 임금들의 가장 흔한 고질병이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sup>8)</sup>. 이

4)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8, pp. 218-220.

5)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 p. 421.

6) 孫弘烈의 같은 책, 같은 쪽.

7) 金斗鍾의 같은 책, 같은 쪽.

8) 洪性鳳은 자신의 논문에서 조선시대 역대 임금들의 가장 빈번한 死因으로 종기를 언급하였는데, 종기로 인해 사망한 임금으로는 文宗, 成宗, 孝宗, 正祖, 純祖 등을 들고 있다. 본 논문은 주제를 死因에 두고 각 임금들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있는데, 역대 임금들의 질병관련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韓國人口學會,

러한 증기를 비롯한 피부질환은 왕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크게 유행하여 宣祖 36년에 다시 治腫廳을 설립하기도 하였고<sup>9)</sup>, 任彦國과 白光炫 등의 治腫醫들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게 된다<sup>10)</sup>. 당시 治腫專門 의원들을 별도로 ‘治腫醫’라 칭할 때도 있었지만<sup>11)</sup> 鍼醫와 藥醫의 구분 하에 일반적으로는 鍼醫에 귀속시켜 인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顯宗代의 鍼醫인 尹後益은 현종의 증기치료에 효험을 얻어 朔寧縣監에 제수되기도 하였고<sup>12)</sup>, 正祖代의 皮載吉은 정조의 증기질환에 고약으로 효력을 발휘하여 내의원의 鍼醫로 임명되기도 하였다<sup>13)</sup>. 즉, 治腫醫들은 鍼醫에 속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 捻挫, 折傷, 瘡瘍 등의 외과질환이 성행한 것도 그 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金洪均 등도 조선중기 이후에 鍼灸術이 발달한 배경으로 軍陣醫學으로서 鍼灸術이 빠른 효과와 실용적 가치를 발휘하여 왕실과 민간에까지 흥행한 것을 들었으며<sup>14)</sup>, 朴文鉉도 그의 논문에서 鍼灸에 대한 관심증대의 이유를 전란으로 인해 각종 創傷이나 腫瘍 등의 외과영역 질환이 증가한 것을 꼽았다<sup>15)</sup>.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조선중기 이후에 鍼灸의 수요가 이전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鍼醫의 역할이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는 鍼灸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약물과 달리 鍼灸는 시술자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지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朝鮮中期는 倭亂과 胡亂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경제

韓國人口學會誌, 14권 1호, 1991, pp. 35-46.)

9) 治腫廳이 처음 설립된 시기를 살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나오질 않는다. 다만 『經國大典』이 완성된 성종 16년 이후부터 中宗 초기 사이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이 부진하여 典醫監에 합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하던 상황 하에 선조대에 이르러 다시금 治腫廳의 필요성이 대두 되게 되었고, 선조 36년에 재 설립된다. (金斗鍾의 같은 책, p. 271.)

10) 實錄 가운데 任彦國에 대한 記事는 나오지 않는다. 白光炫은 4번 나타나는데, 顯宗과 肅宗代에 활약하였던 醫官이었다. 백광현의 기록을 보면, 현종 11년 8월에 병의 회복으로 인한 포상으로 加資되기도 하였고, 숙종 10년 5월에는 강령 현감(康翎縣監)에 임명되었다가 포천 현감(抱川縣監)으로 임지가 바뀌기도 하였다. 이 때 사관의 평에는 “미천(微賤)한 출신이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데도 별안간 이 벼슬을 임명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덧붙이고 있다. 숙종 21년 12월에는 백광현을 ‘증기를 잘 치료하여 神醫라 일컬었다’라고 하면서 脚病을 치료하기 위해 영돈녕부사 윤지완에게 보내준 기록도 나타난다. 숙종 22년에는 백광현이 숙종의 병을 濕痰에 의한 것으로 언급한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나 實錄에서는 백광현을 ‘鍼醫’라 칭하지는 않았다.

11) 인조 11년 7월 12일의 기록에 “治腫敎授”라는 명칭이 나오며, 인조 12년 5월 19일에도 “治腫敎授”로 鄭之門이란 인물이 거론된다. 이후 肅宗代(27년 1월 23일), 英祖代(17년 1월 25일)에도 “治腫敎授”라는 명칭이 보인다.

12) “침의(鍼醫) 윤후익(尹後益)을 특별히 제수하여 삭녕 현감(朔寧縣監)으로 삼았다. 후익은 침술에 정통하여 경자년에 상이 증기(腫氣)로 위독했을 때 후익이 침을 놓아 효험이 있자 특별히 당상관으로 올렸는데, 이번에도 또 이 명이 있었다.” (현종 2년 1월 26일)

13) “상의 병환이 평상시대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지방 의원인 피재길(皮載吉)이 단방(單方)의 고약을 올렸는데 즉시 신기한 효력을 내었기 때문이었다. 재길을 약원(藥院)의 침의(鍼醫)에 임명하도록 하였다.” (정조 17년 7월 16일)

14) 金洪均·朴贊國, 朝鮮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권5, 1991, p. 260,

15) 朴文鉉,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韓國醫史學會, 韓國醫史學會誌, 15권 1호, 2002, p. 74.

적 침체가 극심한 시대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발생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는데<sup>16)</sup>, 이런 시대상황은 민간뿐만 아니라 왕실까지 약물의 求得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7)</sup>. 따라서 약물치료를 대신하여 鍼灸는 침술만이 가지고 있는 치료상의 독특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鍼灸가 가진 편의성과 경제성은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그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Ⅲ. 鍼醫의 활동과 사회적 위상

#### 1. 宣祖에서 仁祖代까지의 鍼醫들

本節에서는 鍼醫라는 명칭이 최초로 나오는 宣祖代부터 光海君과 仁祖代까지 활약했던 鍼醫들의 활동기록을 『朝鮮王朝實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仁祖 이후 孝宗, 顯宗<sup>18)</sup>, 肅宗, 景宗<sup>19)</sup>, 英祖代에도 鍼醫가 몇 차례 언급되어 나오기는 하지만 단순히 鍼醫라 거론될 뿐 구체적인 人名까지는 수록해 놓고 있지 않다.

##### (1) 吳忞

전술한 바와 같이 『朝鮮王朝實錄』을 통해 鍼醫로 거론되어 나오는 최초의 인물은 오변이다. 鍼醫인 오변은 선조 19년 10월에 어의들과 함께 대전에 들어왔는데, 중전의 咽喉病에 침을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후 실록의 기록에는 다시 오변에 관한 기사가 나오질 않는다.

##### (2) 吳元宗

16) 현대 기상학자들은 조선중기가 운석이 연이어 떨어지고 이상저온현상이 계속되는 등 지구 전체차원의 기상이변 시대였던 것으로 말하고 있다. 농경위주의 사회에서 이런 상황은 경제적 침체를 더욱 가중시켜 약물의 求得에 여의치 않은 상황을 초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김호는 자신의 저작에서 “15-6세기는 조선후기에 비해 약물의 구득이 어려웠기 때문에 약물보다는 침이 선호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一志社, 2000, p. 56.)

18) 顯宗代에 尹後益이란 鍼醫가 여러 차례 언급되어 나온다. 운후익은 그 공로로 삭령현감에 제수되기도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시간적 차이로 인해 宣祖, 光海君, 仁祖의 3대만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19) 景宗代에 鍼醫로 李得英이란 인물이 한번 나온다. 경종 3년 12월 3일의 기록을 보면 內醫院의 醫官인 李時弼이 술을 먹고 다른 의관들을 비방하고 임금이 타는 乘輿를 외람되게 손가락으로 가르켰다는 죄목으로 유배되는데, 이 때 이시필 휘하의 鍼醫였던 이득영이 진상을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 “오시(午時)에 중전의 인후증(咽喉症)이 위중하자, 의약(議藥)할 일로 어의(御醫) 모두를 대전(大殿)에 들어오라 명하였는데, 침의(鍼醫) 오변(吳忞)도 들어왔다. 약방 제조(藥房提調)가 차비문(差備門) 밖에 와서 문안하자,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 19년 10월 1일)

오원종의 기록은 선조 27년에 나오는데, 醫官은 아니었다. 오원종은 당시에 발생했던 宋儒眞의 역적모의 사건과 연루되어 실록에 나타난다. 선조가 친국한 공초내용을 보면 당시 오원종은 나이 41세로 용인(龍仁)출신이며, 서울에 와서 침업(鍼業)으로 생활한 자였다고 하였는데, 결국 능지처참에 처해진다<sup>21)</sup>. 상경 이후 고관들의 질병에 침을 놓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醫官은 아니었지만 鍼醫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3) 朴春茂

박춘무는 宣祖代의 醫官으로, 여러 의관들과 함께 치료에 참여한 기록이 선조 28년에 나타난다<sup>22)</sup>. 비슷한 기록이 선조 29년에도 나오는데, 당시 선조에게 나타난 耳鳴症과 손등의 浮氣, 그리고 외쪽 무릎이 시리고 아픈 증상 등에 침을 놓은 것을 볼 수 있다<sup>23)</sup>.

박춘무는 선조에게 상당한 신임을 얻어 林川<sup>24)</sup>郡守職에 등용되기도 하였는데<sup>25)</sup>, 왕실에서 침을 맞을 때마다 불러올리는 불편함으로 인해 경기 내의 지방관직을 다시 제수한다<sup>26)</sup>. 이때 사관의 논평에는 박춘무가 침술로 기용되었으나 적격자가 아니어서 지방관으로 제수됨이 걸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sup>27)</sup>.

이후 박춘무는 인천부사(仁川府使)<sup>28)</sup>에 제수되기도 하였으며<sup>29)</sup>, 31년 9월에는 무단 출타로 인해 일종의 경징계인 추고(推考)<sup>30)</sup>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sup>31)</sup>. 그렇지만 선

21) 선조 27년 1월 24일, 25일. 선조수정실록 27년 1월 1일.

22) “진시(辰時)에 상이 별전(別殿) 편방(便房)에 나와 의관(醫官) 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이공기(李公沂)·박춘무(朴春茂)·김영국(金榮國)·정희생(鄭希生) 등을 인견하고 침구(鍼灸) 치료를 받았는데,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 김응남, 제조 홍진(洪進), 부제조 오억령(吳億齡) 등이 입시하였다.” (선조 28년 4월 13일)

23)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제조(藥房提調) 김응남(金應南), 부제조(副提調) 오억령(吳億齡),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守)·허준(許浚)·이공기(李公沂)·박춘무(朴春茂)·심발(沈發)·김영국(金榮國)이 입시하였다. … 왼쪽 귀가 심하게 울리고 들리지도 않으므로, … 왼손의 손등에 부기가 있는 듯하고 손가락을 닿기면 아파서 침을 맞으려 한다. 왼쪽 무릎도 시고 아파서 잘 걷지 못하므로 침을 맞아 맥을 트려고 한다.” (선조 29년 5월 11일)

24) 林川: 忠淸道 公州牧 소속의 郡. 지금의 충남 부여군 임천면.

25) 實錄에는 박춘무가 임천군수에 敍된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다만 선조 30년 4월 21일의 기록에 “임천군수 박춘무”란 언급이 있어 이전에 임천군수직에 등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 “내의원(內醫院)이 아뢰기를 ‘임천 군수(林川郡守) 박춘무(朴春茂)는 침술이 정미롭고 자세하여 전부터 대전(大殿)·동궁(東宮)께서 침을 맞을 적에는 외방에 있어도 오래 불러왔었습니다. …경기의 한적한 고을로 바꾸도록 명하여 오가는데 따른 폐단을 덜어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승급하여 제수하라고 하였다.” (선조 30년 4월 21일)

27) “사신은 논한다. 박춘무는 하나의 침술로 기용되었다. 전에 수령이 되었을 적에도 이미 걸맞지 않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제 임천의 큰 고을을 제수한 것은 더욱 걸맞지 않다. 위에서 침을 맞는 그 일 때문에 임천이 멀다고 한다면 경관(京官)으로 바꾸어 차정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기어코 임민(臨民)의 직을 제수하려 하는가? …” (같은 날의 기록)

28) 仁川都護府. 지금의 인천시 중구 일대.

29) 선조 30년 4월 23일.

30) 추고(推考): 罪過가 있는 관원을 신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원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사용됨.

31) 선조 31년 9월 22일의 기록을 보면, 선조가 자신의 질병치유를 위해 平山에서 溫泉浴을 하고자 하였는

조의 박춘무에 대한 신임은 깊어 31년 10월에 부평<sup>32)</sup>부사(富平府使)에 제수된다. 이때도 사관의 평에는 “醫術이 精하지만 다른 장기는 별로 없다. 들어가서 임금을 진찰하고 침을 놓고 뜸질하여 효력이 있었으므로 이 명이 있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sup>33)</sup>.

#### (4) 鄭希生

정희생은 선조대의 의관으로 鍼醫로 추정된다. 정희생의 기록은 1번 나오는데, 선조 28년 朴春茂, 金榮國 등과 함께 선조의 질병치료에 鍼灸를 시술한 내용이 나타난다<sup>34)</sup>.

#### (5) 沈發

심발은 선조대의 의관으로 鍼醫로 여겨진다. 선조 29년 5월 11일 선조의 질병치료에 여러 의관들과 함께 입시하였고<sup>35)</sup>, 그 공로로 典牲署<sup>36)</sup>의 主簿에 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 29년 11월 이유 없이 고향에 내려감으로서 직무를 이탈한 죄로 파직 당한다<sup>37)</sup>. 파직 이후에도 여전히 선조와 세자를 위해 침을 놓았는데, 선조 30년 4월의 기록<sup>38)</sup>을 보면 선조가 직접 심발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헌납(獻納)<sup>39)</sup> 김

데, 그 택일을 여러 의관들과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당시 박춘무는 허임(許任)과 더불어 무단 출타 중에 있어 내의원에서 추고할 것을 주청한다.

32) 富平: 富平都護府. 『世宗實錄·地理志』를 보면 관할지역으로 강화(江華都護府), 인천군·해풍군, 김포현·교동현·양천현·통진현 등이 있다. 지금의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 해당.

33) 선조 31년 10월 15일.

34) “진시(辰時)에 상이 별전(別殿) 편방(便房)에 나와 의관(醫官) 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이공기(李公沂)·박춘무(朴春茂)·김영국(金榮國)·정희생(鄭希生) 등을 인견하고 침구(鍼灸) 치료를 받았는데,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 김응남, 제조 홍진(洪進), 부제조 오억령(吳億齡) 등이 입시하였다.” (선조 28년 4월 13일)

35) 전술한 朴春茂의 각주 내용을 참조할 것.

36) 典牲署: 궁중의 제사에 쓸 짐승을 기르는 일을 맡아 보던 관청. 소속 관원으로 判官, 主簿, 直長, 奉事 각 1인과 參奉 2인이 있었다.

37)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마다 자기 편할 대로 하려는 마음을 품으므로, 현재 서울에서 벼슬하고 있는 관원이 버젓이 사사롭게 고향에 내려가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 전생주부(典牲主簿) 심발(沈發)은 성품이 본디 어리석고 게을러서 전혀 직무에 이바지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또 까닭 없이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먼저 파직(罷職)한 뒤에 추고(推考)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린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29년 11월 18일)

38) “김신국(金薰國)이 와서 아뢰기를 ‘전 주부(主簿) 심발(沈發)은 본시 하찮고 무상한 사람으로서 다만 침술을 조금 안다는 것으로 조정의 반열에 끼었습니다. …근일 침을 맞으실 즈음에 교만을 피우는 표정이 많이 있어 물정(物情)이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동궁(東宮)께서 날짜를 점쳐 침을 맞으실 적에 도제조 이하 모든 관원이 아침부터 일제히 모여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병을 핑계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히 느릿느릿 나왔으므로 침을 맞는 일이 마침내 이 때문에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추국하도록 명하여 군상(君上)을 능멸한 죄를 정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심발은 그의 얼굴을 보니 병이 가볍지 않아서 기증(氣症)이 매우 중하였다. 나는 도리어 침을 잡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서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맞고자 하였으나 그가 굳이 침을 놓았다. 동궁에게 침을 놓을 적에도 어찌 교만을 피웠을 리가 있겠는가. 이는 내가 눈으로 본 바인데도 논박을 입으니, 실정 밖의 비방이란 이리하다.’ 하였다.” (선조 30년 4월 25일)

신국이 '심발은 침술로 등용된 하찮은 자인데 세자의 병에 의관들이 함께 입시할 때 병을 핑계로 늦게 나왔으므로 그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 선조는 '이전에 심발에게 침을 맞을 때 그에게 병이 깊은 것을 볼 수 있어서 교만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 자신이 직접 본 바인데도 논박을 당하니 실정 밖의 비방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심발을 변호한다.

## (6) 許任

『鍼灸經驗方』을 저술하여 조선중기 침구학 발달의 빛나는 성과를 드러낸 許任은 선조실록 31년 9월에 최초로 그 이름이 나온다. 당시 선조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平山溫泉에 거동하고자 하였는데, 그 택일을 여러 의관들이 의논하여 결정하도록 하고한다. 그러나 鍼醫인 박춘무와 허임이 무단 출타 중이어서 내의원에서는 그 죄를 推考할 것을 요청한다<sup>40)</sup>.

허임은 선조 34년 3월에 醫官 許浚, 金榮國 등과 함께 입시하여 선조에게 침을 놓았으며<sup>41)</sup>, 이후 고향인 羅州에 내려갔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2)</sup>. 35년 6월에는 선조가 의관 김영국, 허임, 박인령<sup>43)</sup> 등이 鍼術로 일세에 이름이 난 자들인데 고향에 머무르고만 있으니 불러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傳敎를 내린다<sup>44)</sup>.

이로 인해 허임은 다시 서울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선조 37년 선조의 질병치료에 공을 세우고 큰 포상을 받게 된다. 37년 9월의 기록을 보면 宣祖가 偏頭痛을 앓아 침을 맞고자하는 뜻을 밝히며 하문하는 말에 許浚은 스스로 침법에 대해 잘 모른다고 토로하면서 허임의 말을 인용하여 답변한다<sup>45)</sup>. 이 날 取穴은 鍼醫인 남영(南嶸)이 하였고 허임은

39) 獻納: 司諫院의 정5품 벼슬.

40) 선조 31년 9월 22일. 전술한 박춘무의 주석을 참조할 것.

41) “辰時에 상이 편전으로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入侍)하고, 약방 제조 김명원·유근【임금의 지척에서 감히 방귀를 끼었으니 이는 위인이 경솔한 소치이다.】·윤돈, 의관 허준(許浚)·이공기(李公沂)·김영국(金榮國)·허임(許任)이 입시하였는데, 사시에 끝내고 나갔다. 합문(閤門) 밖에서 사주(賜酒) 하라고 명하였다.” (선조 34년 3월 25일)

42) 허임의 정확한 출생지나 고향에 대한 기록은 나오는 바가 없다. 다만 광해군 2년 윤3월 12일의 기록에 “鍼醫 許任이 全羅道 羅州에 가 있어 올라오도록 전교하였는데…”라고 한 것을 보건대 羅州가 허임의 고향으로 추정된다.

43) 박인령은 당시에 침술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實錄의 기록에는 이후 박인령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가 부름을 받고 서울에 올라와 鍼醫로서 醫官職을 수임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올라오지 못했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다.

44) “모든 의관(醫官)은 서울에 모여서 상하의 병을 구제하여야 하는데, 의관 김영국(金榮國)·허임(許任)·박인령 등은 모두 침을 잘 놓는다고 일세를 울리는 사람들로서 임의로 고향에 물러가 있으나 불러 모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실사 위에서 뜻밖에 침을 쓸 일이라도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의(內醫)와 제조(提調) 등은 그 직책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약방(藥房)에 말하라.” (선조 35년 6월 12일)

45) “一更 말에 상이 앓아 오던 편두통(偏頭痛)이 갑작스럽게 발작하였으므로 직숙(直宿)하는 의관(醫官)에게 전교하여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 ‘허임(許任)이 이미 합문(閤門)에 와 있습니다.’ 하니, 들어보내라고 전교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허준(許浚)이 아뢰기를 ‘… 침의(鍼醫)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열기(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함

직접 침을 놓았는데, 큰 효험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달 뒤, 선조는 偏頭痛 치료로 인한 포상을 하게 되는데, 약방도제조(藥房都提調)를 겸한 좌의정 유영경(柳永慶) 이하 여러 관원들에게 각기 차등있게 포상을 내린다. 이 때 허임은 남영과 함께 資級이 加資<sup>46)</sup>되어 정3품 通政大夫에 오르게 된다<sup>47)</sup>. 6품의 品階에서 일약 堂上官으로 파격적인 승진을 하게 된 것이다. 덧붙인 사관의 평에는 허임 등이 하찮은 수고로 인해 갑자기 堂上官으로 승진하였으니 참람됨이 극에 달하였다고 하였다<sup>48)</sup>. 10월 28일에 장령(掌令)<sup>49)</sup> 최동식이 6품직에 있던 허임과 7품인 남영이 조그만 공로로 갑자기 通政大夫에 加資됨은 지나치고 아뢰었고<sup>50)</sup>, 하루 뒤에 다시 司憲府에서 허임과 남영의 통정대부 加資를 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sup>51)</sup>.

선조 39년에 와서는 허임이 선조에게 침치료한 기록이 빈번하게 나오는데, 4월에 2차례<sup>52)</sup>, 5월에 3차례<sup>53)</sup>, 9월에 4차례<sup>54)</sup>에 걸쳐 같은 鍼醫인 南嶽·金榮國·柳季龍과 함께 입

니다. 소신(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허임도 평소에 말하기를 경맥(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아시혈(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병풍을 치라고 명하였는데 … 남영(南嶽)이 혈(穴)을 정하고 허임이 침을 들었다. 상이 침을 맞았다.” (선조 37년 9월 23일)

46) 가자(加資): 品階 승진제도. 또는 승진된 品階를 가리킨다. 정3품 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를 더 올려주거나, 또는 정3품 通政大夫 이상의 品階를 가리켰다.

47) “침의(鍼醫) 허임(許任)·남영(南嶽)에게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가자(加資)하라. 김영국(金榮國)은 승직(陞職)시키고, 어의(御醫) 허준(許濬)에게는 숙마(熟馬)한 1필을 하사하고, 조흥남(趙興男)은 실직(實職)에 붙이라.” (선조 37년 10월 23일)

48) “허임(許任)·남영(南嶽)은 모두 6~7품의 관원으로서 하찮은 수고를 인연하여 갑자기 堂上으로 승진하였으니 관작의 참람됨이 여기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 (같은 날의 기록)

49) 掌令: 司憲府의 종4품 관직.

50) “장령 최동식(崔東式)이 내계하기를 … 허임(許任)은 6품직에 있고 남영(南嶽)은 7품관인데 어떻게 한 때 직분상의 조그만 공로 때문에 갑자기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가자를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물정이 매우 경악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선조 37년 10월 28일)

51) “헌부가 아뢰기를 ‘… 허임과 남영의 통정 대부의 가자(加資)를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방해로운 일이 아니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37년 10월 29일)

52) “巳時에 상이 별전에서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柳永慶), 제조 허욱(許頊), 부제조 윤방(尹昉), 기사관(記事官) 임장(任章)·박증현(朴曾賢)·김성발(金聲發), 어의(御醫) 허준(許濬)·조흥남(趙興男)·이명원(李命源), 침의(計醫) 남영(南嶽)·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오시 초에 파하고 나왔다.” (선조 39년 4월 26일)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약방 도제조 유영경(柳永慶), 제조 허욱(許頊), 부제조 최천건(崔天健), 기사관 임장(任章)·박증현(朴曾賢)·김성발(金聲發), 御醫 허준(許濬)·이명원(李命源)·조흥남(趙興男), 침의(鍼醫) 남영(南嶽)·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사시 말에 파하고 나왔다.” (선조 39년 4월 29일)

53) “辰時 말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유영경(柳永慶), 제조 허욱(許頊), 부제조 최천건(崔天健), 기사관(記事官) 임장(任章)·박증현(朴曾賢)·김성발(金聲發), 어의(御醫) 허준(許濬)·이명원(李命源)·조흥남(趙興男), 침의(鍼醫) 남영(南嶽)·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이 입시하였다. 침을 다 놓고 사시(巳時) 정각에 물러나왔다.” (선조 39년 5월 2일)

“巳時 초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도제조 유영경(柳永慶), 제조 허욱(許頊), 부제조 최천건(崔天健), 기사관(記事官) 임장(任章)·박증현(朴曾賢)·김성발(金聲發), 어의(御醫) 허준(許濬)·이명원(李命源)·조흥남(趙興南), 침의(鍼醫) 남영(南嶽)·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이 입시하였다가 상이 침을 다 맞고 나서 오시(午時) 초에 물러나왔다.” (선조 39년 5월 4일)

“巳時 초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입시하고,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허욱(許

시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光海君代에 들어와 허임은 재능과 공로를 인정받아 麻田郡守<sup>55)</sup>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司憲府와 司諫院에서 계속하여 허임의 지방관직 체차(遞差)<sup>56)</sup>를 건의한다<sup>57)</sup>. 이런 건의에 처음 광해군은 ‘인재의 등용에 귀천이 없고, 허임은 공로와 재주가 있는 인물로 이미 東班의 벼슬을 지냈으며, 더구나 어미와 함께 궁핍한 생활을 하는 처지이므로 보답의 뜻에서 군수직을 제수한 것’이라 밝히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sup>58)</sup>. 그러나 결국 광해군은 계속된 상주에 못 이겨 허임의 마전군수직을 해임하게 한다<sup>59)</sup>. 그렇지만 하루 뒤에 광해군은 허임에게 다시 실첨지(實僉知)<sup>60)</sup>의 직책을 제수하는데, 당시 허임은 흠어미를 봉양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sup>61)</sup>.

이후 허임은 다시 고향인 全羅道 羅州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광해군 2년 2월에 김영국과 함께 서울로 불러올리도록 조치한다<sup>62)</sup>. 그러나 허임은 서울로 올라오라는

項), 부제조 최천건(崔天健), 기사관 임장(任章)·박증현(朴曾賢)·김성발(金聲發), 어의(御醫) 허준(許浚)·조흥남(趙興南)·이명원(李命源), 침의(鍼醫) 남영(南嶸)·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이 입시하였다가 침놓기를 마치자 유시(酉時) 초에 모두 물러나왔다.” (선조 39년 5월 6일)

54)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유영경(柳永慶), 제조(提調) 한준겸(韓浚謙), 부제조(副提調) 이상의(李尙毅), 기사관(記事官) 유학증(兪學曾)·조명옥·유호증(兪好曾), 어의(御醫) 허준(許浚)·조흥남(趙興男)·이명원(李命源), 침의(鍼醫) 남영(南嶸)·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유계룡(柳季龍)이 입시하였다.” (선조 39년 9월 14일)

“약방 도제조 유영경(柳永慶), 제조 한준겸(韓浚謙), 부제조 이상의(李尙毅), 기사관(記事官) 유학증(兪學曾)·조명옥·유호증(兪好曾), 어의(御醫) 허준(許浚)·조흥남(趙興男)·이명원(李命源), 침의(鍼醫) 남영(南嶸)·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유계룡(柳季龍)이 입시하였다. 사시 말에 침맞는 일이 끝났다.” (선조 39년 9월 16일)

“약방 도제조 유영경(柳永慶), 제조 한준겸(韓浚謙), 부제조 이상의(李尙毅), 기사관(記事官) 유학증(兪學曾)·윤형언(尹衡彦)·조명옥, 어의(御醫) 허준(許浚)·조흥남(趙興男)·이명원(李命源), 침의(鍼醫) 남영(南嶸)·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유계룡(柳季龍)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는 일이 끝나고 사시(巳時) 말에 파하였다.” (선조 39년 9월 18일)

“약방 도제조 유영경, 제조 한준겸, 부제조 이상의, 기사관 유학증(兪學曾)·이현(李兪)·조명옥, 어의(御醫) 조흥남(趙興男)·이명원(李命源), 침의(鍼醫) 남영(南嶸)·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유계룡(柳季龍)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는 일이 끝나고 신시(申時) 말에 파하였다.” (선조 39년 9월 20일)

55) 麻田: 지금의 경기도 연천지방.

56) 체차(遞差): 관직에 있는 사람을 그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죄파로 인하여 현임자를 해면(解免)시키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

57) 광해군 1년 10월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4일.

58) “허임은 선조(先朝)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동반의 벼슬길을 댔으니, 그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을 맡겨 한번 시켜보고 그만두는 것이 무슨 불가한 일이겠는가.” (광해군 1년 10월 11일)

“하늘이 인재를 태어나게 하는데 어찌 귀천의 구분이 있겠는가. 허임은 이미 동반의 벼슬길을 댔으니, 한 고을의 수령을 시켜보는 것이 어찌 안 될 일이겠는가.” (광해군 1년 10월 11일).

“허임은 공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주가 쓸 만하다. 그리고 그는 어미와 함께 사는데 궁핍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잔폐된 고을에 수령으로 보내는 것도 공로를 보답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번거롭게 논집하지 말라.” (광해군 1년 10월 14일)

59) 광해군 1년 10월 15일.

60) 實僉知: 實職에 있는 僉知事. 僉知事는 僉知中樞府事의 약칭으로 中樞府의 정3품 관직. 中樞府는 일정한 사무가 없는 堂上官의 벼슬자리.

61) “전 군수 허임에 대해서 실첨지(實僉知)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제수하고 그 전에 우선 그 품계에 준하여 녹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어미를 봉양하며 연명할 수 있도록 하라.” (광해군 1년 10월 16일)

전교를 따르지 않아 司諫院에서 국문(鞠問)<sup>63</sup>에 처할 것을 주청을 하게 되는데<sup>64</sup>, 광해군은 “허임은 전부터 몸에 중병이 있는 자이니, 진작 올라오지 못한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sup>65</sup>라고 하면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 보건대 허임은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으나 이전부터 중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 4년에 와서는 임진왜란 시절 宣祖를 호종(扈從)한 공로로 인해 加資를 받고 3등의 錄勳에 수록되는 영광을 입는다. 광해군 4년 8월에 加資의 명이 있었으며<sup>66</sup>, 동년 9월에 남영·김영국 등과 함께 실직(實職)에 제수된다<sup>67</sup>. 동년 9월 21일에는 호종의 공로로 3등의 錄勳에 수록되는데, 당시 빈청(賓廳)<sup>68</sup>에서 아뢰는 말 가운데 임진왜란 시절 허임이 선조를 호종하며 침을 놓았던 공적의 내용을 볼 수 있다<sup>69</sup>. 즉, 癸巳年(선조 26년, 1593년)에 선조가 해주(11월)에서 침을 맞을 때 입시하였고, 삼례(12월)에 머물 때는 3일 간격으로 침치료를 시행했다고 한 것이다.

광해군 6년의 기록을 보면 ‘鍼醫들은 일찍 들어오라’는 왕명을 받들지 않아 허임이 推考되기도 한 것을 보건대<sup>70</sup>, 이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 內醫院 소속의 醫官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司憲府와 司諫院에서는 허임의 죄를 鞠問에 처할 것을 청했지만 광해군은 경징계에 그치도록 한 것이다.

광해군 7년에는 남영과 함께 허임을 경기도와 가까운 지역의 수령으로 제수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며<sup>71</sup>, 이로 인해 이듬해 영평현령(永平縣令)<sup>72</sup>에 제수되기도 한다<sup>73</sup>. 동년 11월에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같은 鍼醫인 유대명·김귀상 등과 함께 資級을 더해 받게 된다<sup>74</sup>.

62) “침의(鍼醫) 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 등을 속히 불러 와서 도하(都下)에 머물러 있게 하여 불시의 조치에 대비하게 하라.” (광해군 2년 2월 24일)

63) 국문(鞠問): 중대한 죄인을 왕명에 의해 죄함을 정하여 鞠廳에서 訊問하는 것.

64) 광해군 2년 윤3월 12일, 13일, 16일.

65) “허임은 전부터 몸에 중병이 있는 자이니, 진작 올라오지 못한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추고하여 실정을 알아내고서 처치하여도 늦지 않다. 더구나 곧 침을 맞고자 하니, 용서해줄 만하다.” (광해군 2년 윤3월 13일)

66) “침의(鍼醫) 허임(許任)은 서로(西路)에서 남하할 때 호종하여 공로가 있으니 가자하라.” (광해군 4년 8월 9일)

67) “침의(鍼醫) 허임(許任)·남영(南嶽)·김영국(金榮國) 등에게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광해군 4년 9월 7일)

68) 賓廳: 領議政, 左議政, 右議政이 정무를 맡아 보는 곳.

69) “빈청(賓廳)이 아뢰기를 ‘... 癸巳年 11월 7일 상께서 해주(海州)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을 맞을 때 허임이 입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2일 삼례역(參禮驛)에서 주둔해 있을 때 허임이 입직하였으며, 이 뒤로는 으레 3일 간격으로 입직하였습니다. ...’ 하니, 답하기를 ‘허임은 서남쪽으로 행할 때 공로가 아주 많았으니, 3등에 수록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광해군 4년 9월 21일)

70) 광해군 6년 6월 11일.

71) “전교하기를 ‘허임(許任)과 남영(南嶽)을 경기도와 가까운 도의 수령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제수하되 속히 거행하라.’ 하였는데, 침의(鍼醫)였다.” (광해군 7년 11월 28일)

72) 永平: 지금의 경기도 포천지역.

73) 광해군 8년 1월 23일.

광해군 9년에 들어와서는 양주목사(楊州牧使)<sup>75)</sup>에 제수되기도 하였으나 司憲府와 司諫院의 잇단 반대에 부딪혀 약 1달 뒤에 부평부사(富平府使)로 직책을 바꾸기도 하였다. 즉, 동년 2월에 양주목사에 제수되었는데, 사관의 평에는 허임이 賤出로서 목사에 제수되었다고 덧붙이고 있다<sup>76)</sup>. 6일 후에 사헌부에서 허임의 양주목사직 제수의 불가함을 강력하게 청하는데, 그 이유로서 양주가 중요한 지역이며, 허임의 아버지가 官奴이고 어머니는 私婢여서 친출 중의 친출로 이전의 마전군수직이나 영평현령직을 수임할 때도 휘하의 관리들을 장악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sup>77)</sup>. 이후 9차례나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허임의 양주목사직 체차(遞差)를 건의하는데<sup>78)</sup>, 결국 광해군은 허임의 직책을 부평부사직으로 바꾸도록 한다<sup>79)</sup>. 허임은 임지인 부평으로 떠날 때 사조(辭朝)<sup>80)</sup>를 하면서 광해군에게 마지막으로 침을 놓는다. 이 때 덧붙인 사관의 평에는 허임이 악공(樂工) 허억복(許億福)의 아들로 2품의 관직까지 올랐으나 지방관 재직시에 백성들을 수탈하기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sup>81)</sup>. 허임은 부평부사직을 수임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서울로 올라와 鍼術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sup>82)</sup>.

광해군 11년에는 醫官들의 대대적인 포상시에 숙마(熟馬) 1필을 하사 받기도 하였고<sup>83)</sup>, 같은 날 노모의 중한 병세로 인해 별도의 資級을 더해 받기도 하였다<sup>84)</sup>.

광해군 14년에는 남양부사(南陽府使)<sup>85)</sup>로 제수되었는데, 이 때 허임의 아버지를 허억복

74) “침의(鍼醫) 허임(許任)·유대명(柳大鳴)·김귀상(金龜祥) 등은 여러해 동안 침을 맞을 때에 입시하였으니 모두 자급을 더해 주라. 김귀상은 상의원 판관에 올려 제수하라.” (광해군 8년 11월 27일)

75) 楊州: 지금의 서울 도봉구와 경기 남양주시 일대.

76) “영평현령(永平縣令) 허임(許任)을 양주 목사(楊州牧使)에 제수하라.’ 하였다. … 허임(許任)은 친출(賤出)로서 양주 목사에 제수되었다.” (광해군 9년 2월 12일)

77) “… 새 목사 허임(許任)은 아버지는 관노(官奴)이고 어머니는 사비(私婢)로, 비천한 자 중에서도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침술(鍼術)로 발신(發身)하여 녹훈되고 봉군(封君)되기까지 하였으니, 분수에 이미 넘친 것으로, … 선조(先祖) 때에도 마전 군수(麻田郡守)에 제수되자, 본군의 하리(下吏)들이 그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한 사람도 와서 맞이해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때문에 아뢰어 체직시켰습니다. 영평(永平)의 수령이 되어서도 제대로 하리들을 장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서울의 팔다리가 되는 이 중요한 지역이겠습니까. 속히 체차하도록 명하소서.” (광해군 9년 2월 18일)

78) 광해군 9년 2월 19, 20, 21, 25일, 26일.

79) “양주목사(楊州牧使) 허임(許任)과 부평부사(富平府使) 이익빈(李翼賓)을 서로 바꾸어라.” (광해군 9년 3월 9일)

80) 辭朝: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 전에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일.

81) “부평부사(富平府使) 허임(許任)이 사조(辭朝)하였다. 대개 상이 침을 맞은 뒤에,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허임은 악공(樂工) 허억복(許億福)의 아들이다. 침술이 뛰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아서 2품의 관직에 뛰어올랐고 목민관(牧民官)이 되기까지 하였으니, 명기(名器)의 옥됨이 또한 심하다. 더구나 허임은 고을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굶어 들이기만을 전적으로 일삼아 온 경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들 떠나게 만들었으니 통분함을 어찌 금할 수 있겠는가.” (광해군 9년 6월 21일)

82) 광해군 9년 11월 10일의 기록을 보면 부평부사(富平府使) 허임(許任)과 금천현감(衿川縣監) 유대명(柳大鳴)을 속히 올려 보내라는 전교를 내린다. 이 날 사관의 평에는 두 사람이 모두 孽子라 기술하였다.

83) 광해군 11년 12월 13일.

84) “부평 부사(富平府使) 허임(許任)은 위에서 편찮으실 때 여러 해 입시하여 침을 놓은 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들으니,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병세가 중하다고 하니, 자급을 더해 주도록 하라.”

(許億福)이 아닌 허억봉(許億逢)으로 표기하고 있다<sup>86)</sup>.

實錄 가운데 허임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광해군 15년에 나온다<sup>87)</sup>. 이 때 光海君은 자신의 병을 화병(火病)으로 말하면서, 요즘 御醫들이 前代와 달리 入侍할 때 들은 下敎의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고 다닌다고 꾸짖는다. 당시 광해군은 상당히 노해 “병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침과 약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고까지 하면서, 허임과 안언길(安彦吉)은 내려가도록 조치한다. 이후 실록에 허임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을 보건대, 이 일로 인해 허임은 歸鄕조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날 허임은 御醫 조흥남(趙興男)·신득일(申得一)과 鍼醫 유대명(柳大鳴)·유계룡(柳季龍)·안언길 등과 함께 祿 1等を 감봉 당한다.

朴文鉉은 자신의 학위논문에서 實錄의 기록과 함께 『鍼灸經驗方』의 序文과 跋文, 그리고 『河陽許氏世譜』 등을 토대로 許任의 생애를 자세히 추적·정리하였다<sup>88)</sup>. 본 논문에서는 허임이 왕실소속의 鍼醫로 활동했던 기간을 선조 31년(1598년)으로부터 광해군 15년(1623년)까지의 26년간으로 보았으며, 대략 허임의 나이 29세에서 54세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추산하였다. 아래 내용은 박문현의 논문 내용을 그대로 全載한 것이다.

- |            |   |
|------------|---|
| 1570년(?)   | - 樂工인 부친 許億鳳(許億逢, 혹은 許億福)과 私婢였던 모친 사이에서 출생  |
| 1593년(24세) | - 임진왜란 중이던 癸巳年 宣祖의 서남행시 수행하여 11월엔 해주에서, 12월엔 參禮驛에서 3일 간격으로 침치료를 시행함.  |
| 1598년(29세) | - ‘鍼醫 許任’ 이란 호칭이 實錄에 처음 보임.   |
| 1601년(32세) | - 許浚과 함께 입시하여 선조의 침치료에 참여함.   |
| 1602년(33세) | - 고향에 물러감. 침을 잘 놓아 일세에 이름을 날리는 자로 언급됨.  |
| 1604년(35세) | - 9/23 선조의 갑작스런 偏頭痛에 야간 입시하여 진료함. 阿是穴에 대한 허임의 견해를 허준이 언급함.<br>10/23 편두통을 치료한 공로로 포상을 받음. 6품직에서 當上(通政大夫)로 승진. 堂上官의 加賚는 지나치다는 여러 신하들의 간쟁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 1606년(37세) | - 4/26, 29, 5/2, 4, 6일 연속 5차례 걸쳐 어의 허준 등과 침의 남영, 김영국 등과 함께 입시하여 침치료를 함. 9/14, 16, 18, 20일에도 입시하여 진료함.   |

85) 南陽: 지금의 경기도 수원과 화성 일대.

86) “허임(許任)을 특별히 제수하여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고 【허임은 악공 허억봉(許億逢)의 아들인데, 난리 때에 사사로이 덕을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 (광해군 14년 4월 6일)

87) “오즘의 어의들은 선조(先祖) 때의 의관들과 같지 아니하여 하교한 일들을 모두 경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적어서 외부로 내보내기까지 하니 그들의 죄는 주벌을 해야 할 것이다. … 기혈이 모두 허하다는 말은 내가 하교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경들에게 거짓으로 고할 수 있겠는가. 대체로 나의 증세는 화병이므로 눈을 감고 조용히 조식한 뒤에야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 이후 경들은 다시 와서 문안하지 말고 나의 병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침과 약을 모두 정지하도록 하라. … 허임(許任)·안언길(安彦吉) 등은 즉시 모두 내려가도록 하라. … 어의 조흥남(趙興男)·신득일(申得一), 침의 허임·유대명(柳大鳴)·유계룡(柳季龍)·안언길 등은 마땅히 잡아다 추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현재 조선중에 있으니 지금 우선 추고만 하고 녹 일등(一等)을 감봉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후 또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모두 잡아다 추국하도록 하라.” (광해군 15년 2월 19일)

88) 朴文鉉,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韓國醫史學會, 韓國醫史學會誌, 15권 1호, 2002, pp. 69-70.

- 1609년(40세) - 광해군에게 재능과 공로를 인정받아 麻田郡守에 임명됨. 그러나 사헌부의 반대로 이내 물러나고 實僉知에 임명됨. 모친을 봉양하며 궁핍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임.
- 1610년(41세) - 2/24 鍼醫들을 서울 안에 머물게 함.  
3/12 전라도 羅州의 집에 있음. 올라오도록 여러 차례 傳敎를 받고도 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3/13 허임의 몸에 전부터 중병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됨.
- 1612년(43세) - 8/9 西路에서 남하할 때 扈從했던 공로로 加資받음.  
9/21 癸巳年(1593년) 선조의 서남행시 수행하며 침치료를 한 공로로 3등의 錄勳에 수록됨.
- 1614년(45세) - 內局의 醫官에 속해 있음. 궐문 밖에서 대기하다가 필요시 입시함.
- 1615년(46세) - 11/28 광해군이 허임을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으로 임명할 것을 지시.
- 1616년(47세) - 1/23 永平縣令으로 임명됨.  
11/27 여러 해 동안 입시하여 침치료를 한 공로로 자금을 더해 받음.
- 1617년(48세) - 2/12 楊州牧使에 임명됨.  
2/18 천출이라는 이유로 사헌부에서 직위교체를 잇달아 간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음.  
3/9 富平府使로 자리를 바꿈.  
6/21 임금에게 침을 놓고 인사를 하고 임지로 돌아감.
- 1619년(50세) - 11/23 의약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시 熟馬 1필을 하사 받음.  
12/13 노모의 병세가 중하여 자금을 더해 받음.
- 1622년(53세) - 4/6 南陽府使에 임명됨.
- 1623년(54세) - 2/19 의관들의 경솔한 행위에 대해 광해군의 질책을 받고 물러감. 다른 어의 및 鍼醫와 더불어 문책을 받고 祿一等을 감봉 당함. (實錄의 마지막 기록)
- 1644년(75세) - 『鍼灸經驗方』 간행.

## (7) 金榮國

김영국은 宣祖代와 光海君代에 활동하였던 鍼醫였다. 실록 가운데 김영국에 관한 기사는 선조 28년 4월에 처음 나온다. 이 때 김영국은 許浚을 비롯해 같은 鍼醫인 朴春茂·鄭希生 등과 함께 선조에게 施鍼한다<sup>89)</sup>. 선조 29년에도 여러 의관들과 함께 입시하여 선조의 耳鳴症, 왼손 손등의 浮氣, 왼쪽 무릎이 시고 아픈 증세에 침을 놓는다<sup>90)</sup>.

선조 32년에는 양천현감(陽川縣監)<sup>91)</sup>으로 제수되었는데, 사관의 평에는 “침의(鍼醫)로서 출세하여 6品の 實職에 超授되어 수령에 임명되기까지 하였으니, 관작의 외람됨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다<sup>92)</sup>.

김영국은 양천현감으로 제수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올라와 시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33년 1월의 기록에 선조가 침을 놓을 시기를 김영국에게 하문하여 시행하라는 전교가 있었고<sup>93)</sup>, 같은 날 기록에 김영국이 일기가 아직 추워 침을 놓기 어려우니 다음에

89) 선조 28년 4월 13일. 박춘무의 각주 내용을 참조할 것.

90) 선조 29년 5월 11일. 박춘무의 각주 내용을 참조할 것.

91) 陽川: 京畿道 富平都護府 陽川縣. 지금의 서울 양천구.

92) 선조 32년 6월 14일.

93) “오늘이라도 침을 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날씨가 따뜻하기를 기다려서 놓아야 하는지를 김영국(金榮國)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놓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고 있다<sup>94</sup>). 이에 김영국은 다시 임지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선조는 淸心丸에다가 木通·連翹·赤茯苓 등을 가미시킨 처방을 복용한다.

이듬해에도 허준·허임 등과 함께 입시하여 선조에게 침을 놓은 기록이 나타나는데<sup>95</sup>, 이후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선조 35년 6월의 기록을 보면 허임·박인령 등과 함께 김영국이 침술로 일세에 이름을 날린 자들인데 임의로 고향에 물러가 있으니 비상시를 대비하여 불러올리도록 전교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6</sup>).

선조 37년에는 대대적인 인사이동시 청양현감(靑陽縣監)<sup>97</sup>으로 제수된다<sup>98</sup>). 그러나 3일 만에 司諫院에서 2가지 이유를 들어 그 직을 遞差(遞差)시키길 건의하였는데, 받아들여진다. 옥후(玉候)가 미령한 때에 침을 잘 놓는 김영국을 외방에 부임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한가지 이유였으며, 다른 이유는 이전에 수령(陽川縣監)으로 있을 때 고을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비난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김영국은 선조의 질병에 계속 해서 침을 놓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偏頭痛 치료로 인한 포상으로 승직(陞職)이 되기도 한다<sup>99</sup>).

선조 39년에는 4월에 2차례, 5월에 3차례, 9월에 4차례에 걸쳐 같은 鍼醫인 許任·南嶸·柳季龍과 함께 입시하여 치료를 한 기록이 나온다<sup>100</sup>). 이 과정에서 김영국은 공로를 인정받아 가까운 과천현감(果川縣監)으로 제수되는데, 여전히 사관의 평에는 그를 용렬한 상민으로 지칭하면서 현감직에 제수됨이 참람하다고 덧붙이고 있다<sup>101</sup>).

이후 김영국은 고향인 金溝<sup>102</sup>에 내려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103</sup>). 광해군 2년 2월에는 허임과 함께 김영국을 서울로 불러올리도록 전교한 기록이 나타나며<sup>104</sup>), 12월에는

에게 하문하라. 만일 순월(旬月) 사이에는 놓을 수 없다고 하면, 영국은 수령(守令)이니 도로 내려 보냈다가 다음에 올라오게 해야 한다. 의논하여 아뢰라. 혈(穴)을 의논한 것은 미리 알고 싶다.” (선조 33년 1월 20일)

94) “홍진과 유희서가 回啓하기를 ‘김영국에게 물어보니 일기가 아직 추워 점혈(點穴)하고 침을 놓을 적에 의대를 벗으시게 하기가 매우 미안스럽다. … 다음달 열흘 사이에 우선 일기가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김영국은 상의 분부대로 내려보냈다가 뒤에 올라 오게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95) 선조 34년 3월 25일.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96) 선조 35년 6월 12일.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97) 靑陽: 忠淸道 洪州牧 靑陽縣. 지금의 忠南 靑陽郡.

98) 선조 37년 6월 22일.

99) 선조 37년 10월 23일.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100)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101) “김영국(金榮國)을 【용렬한 상민으로 잠시 침술(鍼術)에 종사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직에까지 이르니, 명기(名器)의 참람함이 이때와 같은 적이 없었다.】 과천현감(果川縣監)으로 삼았다.” (선조 39년 5월 8일)

102) 金溝: 지금의 전북 김제시.

103) 광해군 2년 12월 24일의 기록에 근거함.

104) “침의(鍼醫) 허임(許任)·김영국(金榮國) 등을 속히 불러 와서 도하(都下)에 머물러 있게 하여 불시의

金溝에 사는 김영국을 다른 침의들과 더불어 말을 지급해 올라오도록 한다<sup>105</sup>). 이들 뒤에는 정확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김영국을 경기도내의 수령에 제수한다<sup>106</sup>).

광해군 4년 9월에는 김영국 등이 부름을 받고 올라와 있으나 특별한 책무가 없으니 軍職에 붙여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주에 광해군이 윤허하기도 하였고<sup>107</sup>), 3일 뒤에는 허임·남영 등과 함께 實職에 제수하라는 명을 내린다<sup>108</sup>).

김영국에 관한 實錄의 마지막 기록은 광해군 5년 1월에 나온다. 당시 김영국은 70세가 가까운 노령이었는데, 노직(老職)으로 4품직에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여진다. 承政院에서 이를 반대하였으나 광해군은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sup>109</sup>)<sup>110</sup>).

## (8) 南嶽

남영도 宣祖와 光海君代에 활동하던 鍼醫였다. 실록 가운데 남영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선조 34년 3월이다. 이 때 선조가 침을 맞았는데, 鍼醫인 幼學<sup>111</sup>) 남영이 입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12</sup>). 남영을 ‘幼學’이라 칭하는 것을 보건대 그는 당시 鍼醫로서는 드물게 士族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조치에 대비하게 하라.” (광해군 2년 2월 24일)

105) “침의(鍼醫) 김영국(金榮國)·김징·김귀상(金龜祥) 등을 서울로 불러들이었는데, 따뜻한 봄을 기다려 침을 맞기 위한 것이었다. 내국이, 삼도(三道) 관찰사에게 하유하여 금구(金溝)에 사는 김영국, 옥천(沃川)에 사는 김징, 거창(居昌)에 사는 김귀상 등에게 말을 지급하여 올려 보내도록 하기를 청하니 따랐다.” (광해군 2년 12월 24일)

106) “침의(鍼醫) 김영국(金榮國)을 경기도의 수령에 제수하게 하였다. 영국은 천한 벼슬아치로서 침술을 가지고 출세하여 선조(先朝) 때부터 동반(東班)으로 옮겨와 음재(昆宰)를 지낸 자이다. 이때에 이르러 이러한 명이 내리니, 대개 가까운 곳에 두어 부르면 곧 달려오게 하고자 함이었다.” (광해군 2년 12월 26일)

107) “아뢰기를 ‘침의(鍼醫)인 전 군수 남영(南嶽)과 전 현감 김영국(金榮國), 전 사과 전징이 지금 부름을 받고 올라와 있는데, 현재 한산(閑散) 중에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군직(軍職)에 붙여서 상사(常仕)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각과(各科)가 아직 멀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몹시 어려울 것이니 우선 급료(給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광해군 4년 9월 4일)

108) “침의(鍼醫) 허임(許任)·남영(南嶽)·김영국(金榮國) 등에게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실직(實職)을 제수하라.” (광해군 4년 9월 7일)

109) “정원이 아뢰기를 ‘국가가 노인을 우대하여 관작을 주는 법은 법전에 실려 있는데, 반드시 4품직에 나이 80이 된 연후에 은혜로운 명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현감 김영국(金榮國)은 직이 겨우 6품이고 나이 근근 70인데, 무릅쓰고 상언(上言)을 올려 분수 이외의 것을 위람되어 바랐습니다. … 김영국의 노직(老職)에 관한 공사(公事)는 거행치 마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광해군 5년 1월 7일)

110) 金斗鍾의 『韓國醫學史』에서는 김영국이 陞職되지 않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實錄에는 분명히 승정원의 반대를 광해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金斗鍾의 『韓國醫學史』, 394쪽을 참조할 것.)

111) 幼學: 士族으로서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사람. 조선중기 이후에는 各道の 幼學 중 재능과 행실이 뛰어나며 40세 이상인 사람을 式年 정월에 고을 수령이 추천하면 관찰사가 이를 吏曹에 추천하였음. (式年: 太歲에 子·午·卯·酉가 드는 해. 이 해에 科擧를 보이고 戶籍 등을 정리함.)

112) “상이 침을 맞았다. 입시 인원은 전과 같다. 침의(鍼醫) 유학(幼學) 남영(南嶽)도 입시하였다.” (선조 34년 3월 29일)

선조 37년 9월에 선조가 偏頭痛 증세로 침을 맞을시 남영이 取穴하고 허임을 시술한 것을 볼 수 있고<sup>113)</sup>, 한 달 뒤 이로 인한 포상으로 허임과 함께 資級이 加資된다<sup>114)</sup>. 이때 남영은 7품직인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sup>115)</sup>에서 일약 堂上官인 通政大夫<sup>116)</sup>의 품계에 오르게 되는데, 사헌부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sup>117)</sup>.

선조 39년에는 4월에 2차례, 5월에 3차례, 9월에 4차례에 걸쳐 같은 鍼醫인 許任·金榮國·柳季龍 등과 함께 입시하여 치료를 한 기록이 나온다<sup>118)</sup>. 이 과정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양성현감(陽城縣監)<sup>119)</sup>으로 제수되기도 하였으나<sup>120)</sup>, 약 1년 뒤에 행정을 몰라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직된다<sup>121)</sup>.

광해군 4년 9월에는 鍼醫 남영 등이 부름을 받고 올라와 있으나 특별한 책무가 없으니 軍職에 붙여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주에 광해군이 윤허하기도 하였고<sup>122)</sup>, 3일 뒤에는 허임·김영국 등과 함께 實職에 제수하라는 명이 내려진다<sup>123)</sup>.

이러한 實職에 제수하라는 왕명은 바로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해군 7년 11월에 들어와 광해군은 남영에 관한 조치가 지금까지 거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속히 제수하라고 명한다<sup>124)</sup>. 같은 달 허임과 함께 남영을 경기도와 가까운 지역의 수령으로 제수하라는 명이 다시 있었으며<sup>125)</sup>, 이로 인해 이듬해 1월 음죽현감(陰竹縣監)<sup>126)</sup>에 제수된

113) 선조 37년 9월 23일. 허임의 각주 내용을 참조할 것.

114) 선조 37년 10월 23일. 허임의 각주 내용을 참조할 것.

115) 長興庫: 조선시대 돛자리·종이·油紙 등의 관청에 쓰이는 물품 공급을 맡은 관청. 直長은 중7품 벼슬.

116) 通政大夫: 정3품 당상관의 품계.

117) “사헌부가 아뢰길 … ‘지난번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 남영(南嶽)은 감히 어미를 위한 귀성을 빙자하여 공차(公差)에 차임되려고 뻔뻔스레 소장을 올렸으니 무식하고 외람됨이 너무 심했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 남영의 상소는 대단한 일이 아니니 파추(罷推)할 것까지는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37년 10월 24일)

“허임(許任)은 6품직에 있고 남영(南嶽)은 7품관인데 어떻게 한때 직분상의 조그만 공로 때문에 갑자기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가자를 제수할 수 있겠습니까. 물정이 매우 경악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37년 10월 28일)

“사헌부에서 아뢰길 … ‘6~7품의 낮은 품계에 있는 사람을 정옥(頂玉)의 반열에까지 뛰어올린 것은 작상의 참람과 명기의 오욕이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허임과 남영의 통정대부의 가자(加資)를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방해로운 일이 아니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 37년 10월 29일)

118)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119) 陽城: 京畿道 水原都護府 陽城縣. 지금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

120) 선조 39년 5월 12일.

121) “헌부가 아뢰기를 ‘양성현감(陽城縣監) 남영(南嶽)은 의술(醫術) 출신(出身)으로 행정(行政)을 몰라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몸가짐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모두 모양이 아니어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있으므로 다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선조 40년 6월 21일)

122) 광해군 4년 9월 4일. 전술한 김영국의 주석내용을 참조할 것.

123) 광해군 4년 9월 7일. 김영국의 주석내용을 참조할 것.

124) “침의(鍼醫) 남영(南嶽)을 수령으로 제수하는 일을 전에 이미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였는데 지금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다.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속히 제수하라.” (광해군 7년 11월 1일)

다<sup>127)</sup>.

## (9) 柳季龍

유계룡은 宣祖와 光海君代에 활동하던 鍼醫였는데 脈診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계룡은 士族 출신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의 명부인 『司馬榜目』에 그의 형과 아우가 나오기 때문이다<sup>128)</sup>. 『司馬榜目』에는 형인 柳仲龍과 아우인 柳文龍이 각기 進士와 生員에 합격한 사실을 실어 놓고 있는데, 부친이 忠義衛<sup>129)</sup>의 관직을 지낸 유유춘(柳有春)으로 기록하고 있다.

實錄 가운데 유계룡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 37년 7월에 나온다. 이 때 內醫院에서 선조의 인후증(咽喉症)과 실음증(失音症)을 거론하면서 유계룡이 脈法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자라고 언급한다<sup>130)</sup>.

선조 39년에 와서는 9월에만 모두 4차례 같은 鍼醫인 南嶸·許任·金榮國 등과 함께 선조에게 침을 놓은 기록이 나타난다<sup>131)</sup>. 이후 선조 40년의 기록에는 內醫院에서 유계룡이 『脈訣』에 능통하니 같이 입시하도록 주청한 내용이 나타난다<sup>132)</sup>.

유계룡은 처음 제수된 기록은 나오질 않지만 회덕현감(懷德縣監)<sup>133)</sup>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 9년 4월 사간원에서 회덕현감 유계룡이 고을을 다스리면서 절도없이 거두어들이고 형벌이 잔혹하므로 파직하라 아뢰고 있기 때문이다<sup>134)</sup>. 광해군은 사실여부를 조사하라 명하는데, 관찰사는 수탈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나 노비에게 잔혹한 형벌을 준 것과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한다<sup>135)</sup>. 이로 인해 유계룡은 현감직에서

125) “전교하기를 ‘허임(許任)과 남영(南嶸)을 경기와 가까운 도의 수령 자리가 비기를 기다려 제수하되, 속히 거행하라.’ 하였는데, 침의(鍼醫)였다.” (광해군 7년 11월 28일)

126) 陰竹: 지금의 경기도 이천시 일대.

127) “특지로 허임(許任)을 영평현령(永平縣令)으로, 남영(南嶸)을 음죽현감(陰竹縣監)으로 삼았다.” (광해군 8년 1월 23일)

128) 형인 유중룡(柳仲龍)은 宣祖 15년 式年試에 進士로 합격하였고, 아우인 유문룡(柳文龍)은 宣祖 38년 增廣試에 生員에 합격한다. (서울시스템에서 개발한 『司馬榜目』 CD-ROM을 참조함.)

129) 忠義衛: 五衛에 하나인 忠佐衛에 속한 군대, 또는 관직. 계속 근무할 경우 정3품에까지 올랐다. 대부분 공신들의 자손들이 자격을 가짐.

130) “약방(藥房)이 아뢰기를 ‘... 심폐(心肺)의 화(火)가 목구멍으로 치솟기 때문에 인후증(咽喉症)과 실음증(失音症)이 오래도록 쾌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들이 의관들을 시켜 각자 약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 습니다마는, 어의(御醫) 이외에 성협(成浹)이 의술에 자못 통달하고 유계룡(柳季龍)은 맥법(脈法)을 조금 알고 있으니, 모두 서계하게 하면 널리 의논하고 참고하여 쓰는 도리에 맞을 듯합니다. 그러나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여쭙니다.’ 하니...” (선조 37년 7월 2일)

131) 9월 14일, 16일, 18일, 20일.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132) “약방(藥房)이 아뢰기를 ‘... 유계룡(柳季龍)은 맥결(脈訣)을 잘 알아서 외관에서 많이들 불러 쓰고 있으니 이 사람도 입시케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히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운허한다.’ 하였다.” (선조 40년 7월 12일)

133) 懷德·忠淸道 公州牧 懷德縣. 지금의 대전시 대덕구 일대.

134) 광해군 9년 4월 4일.

파직된다<sup>136</sup>).

그러나 광해군 10년에 다시 예빈시(禮賓寺)<sup>137</sup> 主簿에 제수되었고<sup>138</sup>), 이후 동북현감(同福縣監)<sup>139</sup>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광해군 12년에 경기도의 수령직으로 바꾸도록 한다<sup>140</sup>).

유계룡에 대한 實錄의 마지막 기록은 광해군 15년 2월의 기사이다. 이 때 유계룡은 다른 醫官들과 함께 入侍할 때 들은 下敎의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고 다닌 죄로 추국(推鞠)<sup>141</sup>되어 祿 1等を 감봉 당한다<sup>142</sup>).

## (10) 朴仁荃

박인전은 宣祖代에 활약하였던 醫官으로 鍼醫였는데, 실록 가운데 2번 기록이 나타난다<sup>143</sup>). 선조 39년 10월에 倭의 회답사로 떠나는 여우길이 동행할 鍼醫와 藥醫를 요청하는데, 이에 박인전이 선발되어 使行에 동반했던 것을 볼 수 있다<sup>144</sup>).

## (11) 金徵(全徵, 金澄)

金徵은 光海君代에 활동하던 鍼醫로 고향이 沃川으로 여겨진다. 『光海君日記』에는 비슷한 이름의 全徵과 金澄이란 鍼醫도 나타나는데, 별개의 인물인지 아니면 동일인인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sup>145</sup>).

135) “회덕현감(懷德縣監) 유계룡(柳季龍)이 법도 없이 굶어들이는 데에 대해서는 비록 들은 바가 없으나, 자신을 배반한 노비를 잡아서 너무 잔혹하게 형벌을 가한 데 대해서는 도내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대개 수령으로 있으면서 직무를 봄에 별로 볼 만한 점이 없으며 경내의 백성들이 몹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간이 아뢴 바가 어찌 근거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광해군 9년 4월 22일)

136) 광해군 9년 4월 25일.

137) 禮賓寺: 賁客의 燕饗과 宗宰의 供饋를 맡아 보던 관청. (宗宰: 宗戚과 宰臣. 供饋: 음식물을 주는 것.)

138) 광해군 10년 10월 11일.

139) 同福: 全羅道 長興都護府 同福縣. 지금의 전남 화순군 동북면 일대.

140) “동북현감(同福縣監) 유계룡(柳季龍)을 경기 고을 수령과 자리를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다. 그는 침을 놓는 사람이었다.” (광해군 12년 11월 19일)

141) 推鞠: 義禁府에서 임금의 특명에 의해 중죄인을 국문하는 일.

142) 광해군 15년 2월 19일.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143) 金斗鍾의 『韓國醫學史』에서는 박인전에 관해 “선조 35년 6월에 內醫로서 善鍼으로서 일세에 鳴하였다. 38년 2월에 孝宗원종공신에 錄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實錄에 나타나질 않는다. 다만 선조 35년 6월 12일에 김영국, 허임, 박인령 등이 鍼術로 일세에 이름이 난 자들인데 고향에 머무르고만 있으니 불러올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傳敎를 내린 것을 볼 수 있다. (허임의 항목을 참조할 것.)

144) 선조 39년 10월 16일, 17일.

145) 孝宗代에도 正言인 金澄이란 인물이 몇 차례 거론되어 나온다. 그러나 효종대의 金澄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의학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고 문신관료직인 司諫院의 正言(정6품) 벼슬을 지낸 것으로 보아 鍼醫인 金澄과는 다른 동명이인으로 여겨진다.

광해군 2년 12월에 다른 鍼醫인 김영국·김귀상 등과 함께 沃川 사는 김정(金徵)을 맡을 지급해 올라오도록 한 것을 볼 수 있고<sup>146)</sup>, 광해군 4년 9월에 전징(全徵) 등이 부름을 받고 올라와 있으나 특별한 책무가 없으니 軍職에 붙여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주에 광해군이 윤허하기도 하였다<sup>147)</sup>. 광해군 11년에는 鍼醫 김정(金澄)을 實職에 제수하라는 왕명이 있기도 하였다<sup>148)</sup>.

## (12) 金龜祥

김귀상은 宣祖와 光海君代 활약하던 鍼醫로 고향이 居昌으로 추정된다<sup>149)</sup>. 선조 40년 5월의 기록을 보면 그는 일찍이 전설사(典設司)<sup>150)</sup>의 별좌(別坐)<sup>151)</sup> 직책을 제수 받았었는데, 庶孽 출신이라는 이유로 司憲府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것을 볼 수 있다<sup>152)</sup>.

이후 김귀상은 고향인 거창으로 내려갔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광해군 2년에 들어와 광해군의 침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鍼醫인 김영국·김징 등과 함께 맡을 지급받아 불러 올라온 것으로 생각된다<sup>153)</sup>.

광해군 5년에는 內醫院의 主簿<sup>154)</sup>에 제수되어 같은 鍼醫인 유대명과 畿甸을 서로 바꾸라는 명을 받들었고<sup>155)</sup>, 광해군 8년에는 資級을 더해 받아 尙衣院<sup>156)</sup> 判官<sup>157)</sup>에 제수된다<sup>158)</sup>.

이후 김귀상은 지평현감(砥平縣監)<sup>159)</sup>에 제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광해군 11년<sup>160)</sup>과 12년<sup>161)</sup>의 기록을 보면 그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학정을 일삼는다는 이유

146) 광해군 2년 12월 24일. 김영국의 주석을 참조할 것.

147) 광해군 4년 9월 4일. 김영국의 주석을 참조할 것.

148) 광해군 11년 9월 10일.

149) 광해군 2년 12월 24일의 기록에 근거함.

150) 典設司: 궁중에서 쓰는 장막(帳幕)의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兵曹에 속한 官署.

151) 別坐: 종5품의 벼슬.

152) “헌부가 아뢰기를 ‘...전설사 별좌(典設司別坐) 김귀상(金龜祥)은 서열이어서 사대부(士大夫)의 반열에 맞지 않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40년 5월 7일)

153) 광해군 2년 12월 24일. 김영국의 주석내용을 참조할 것.

154) 主簿: 敦寧府·奉常寺·宗簿寺·內醫院·司僕寺 및 그 밖의 여러 관아에 딸린 종5품의 관직.

155) “전교하기를 ‘김귀상(金龜相)은 主簿를 제수해야 하니, 유대명(柳大鳴)의 기읍(畿甸)과 서로 바꾸도록 하라.’ 하였는데, 두 사람은 모두 침의(鍼醫)였다.” (광해군 5년 7월 8일)

156) 尙衣院: 東班 소속의 정3품 관아로서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만들고 寶貨·金寶 등을 관장하는 관청.

157) 判官: 중앙의 여러 관아의 종5품 벼슬.

158) “침의(鍼醫) 허임(許任)·유대명(柳大鳴)·김귀상(金龜祥) 등은 여러해 동안 침을 맞을 때에 입시하였으니 모두 자급을 더해 주라. 김귀상은 상의원 판관에 올려 제수하라.” (광해군 8년 11월 27일)

159) 砥平: 京畿道 廣州牧 砥平縣.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일대.

160) “지평 현감(砥平縣監) 김귀상(金龜祥)과 황주 판관(黃州判官) 신수신(愼守身)은 사람됨이 무디고 완고하여 흠덩이와 다름이 없으나 공물을 깎아 자신을 살찌우는 데에는 솜씨가 신묘합니다. 파직하라 명하소서.” (광해군 11년 6월 19일)

로 司憲府의 탄핵을 받아 과직됨을 볼 수 있다<sup>162</sup>).

### (13) 柳大鳴

유대명은 光海君代에 활동하였던 鍼醫였다. 유대명의 기록은 광해군 3년 7월에 처음 나타난다<sup>163</sup>). 이때부터 유대명은 內醫院의 鍼醫로 봉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 5년에는 같은 鍼醫인 김귀상과 서로 畿邑을 바꾸기도 하였다<sup>164</sup>).

광해군 7년에는 유대명을 가까운 경기도내의 수령자리에 제수하라는 전교가 있었으나<sup>165</sup>), 實錄의 기록에는 이후 유대명이 지방관으로 제수된 기록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광해군 9년 11월에 “금천현감(衿川縣監) 유대명(柳大鳴)”이란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보건대, 얼마 후에 금천현감<sup>166</sup>)에 임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광해군 8년에는 여러 해 동안 침을 놓은 공로로 같은 鍼醫 허임·김귀상 등과 함께 資級을 더해 받았고<sup>167</sup>), 광해군 9년에는 치료를 위해 허임과 함께 금천현감 유대명을 속히 올려 보내도록 전교를 내리기도 한다<sup>168</sup>). 이 때 유대명의 출신에 관한 기록도 나오는데, 사관이 덧붙인 평에서 그를 열자(孽子)라 언급하고 있다.

광해군 11년 12월에는 醫官들의 대대적인 포상시에 兒馬 1필을 하사받기도 하였고<sup>169</sup>), 광해군 15년에도 부름을 받아 광해군에게 침치료를 시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sup>170</sup>).

유대명의 마지막 기록은 광해군 15년 2월의 기록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入侍할 때 들은 下敎의 내용을 함부로 발설한 죄로 다른 의관들과 함께 推鞠되어 祿 1등을 감봉 당한다<sup>171</sup>).

161) “김귀상(金龜祥)은 미천한 한 의관(醫官)으로서, 백리(百里)를 다스리는 수령이 되었으니 정사가 매우 문란합니다. 그 직에 나아가서는 마치 모기가 산을 짊어 진 것과 같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일마다 서둘러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육을 채우는 일에만 전념하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먹어서, 백성들의 유망(流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속히 그대로 유임하도록 한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광해군 12년 5월 17일)

162) 광해군 12년 5월 21일.

163) “승전(承傳)한 일이 있는 사람들인 유대명(柳大鳴)과 김호수(金虎秀)를 부직(附職)하라.’ 하였다. 유대명은 침의(鍼醫)이고, 김호수는 작고한 부마(駙馬)의 아들이다.” (광해군 3년 7월 6일)

164) 광해군 5년 7월 8일. 김귀상의 주석을 참조할 것.

165) “침의(鍼醫) 유대명(柳大鳴)을 기전(畿甸)의 하루 이틀 거리에 있는 수령의 자리에 곁원이 있거든 제수토록 하라.” (광해군 7년 3월 28일)

166) 衿川: 京畿道 廣州牧 衿川縣. 지금의 경기도 시흥시.

167) 광해군 8년 11월 27일.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168) “부평 부사(富平府使) 허임(許任)과 금천 현감(衿川縣監) 유대명(柳大鳴)을 속히 올려보낼 일로 경기감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허임과 유대명은 다 열자(孽子)인데 침놓는 재간이 있었으므로 총애를 받아 특별히 기읍(畿邑)의 수령에 제수된 것이다.” (광해군 9년 11월 10일)

169) 광해군 11년 12월 13일.

170) “침의(鍼醫) 유대명(柳大鳴)이 부름을 받고 올라왔다.” (광해군 15년 1월 20일)

171) 광해군 15년 2월 19일. 자세한 내용은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 (14) 安彦吉

안언길도 光海君代에 활동하던 鍼醫였다. 實錄 가운데 안언길이 처음 언급되는 것은 광해군 8년 1월이다. 이 때 광해군은 “안언길(安彦吉)<sup>172</sup>이 침술이 자못 정미롭다 하니, 군직(軍職)에 붙여 내의원에서 항상 근무하게 하라.”<sup>173</sup>라고 명한다. 이로 인해 안언길은 內醫院에서 鍼醫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 8년 9월 鍼醫 백학기와 함께 안언길에게 參上<sup>174</sup>의 급료를 지급하라는 전교가 있었고<sup>175</sup>, 여러 차례 침을 놓은 공로로 인해 이에 상당한 직책에 제수하라는 왕명이 내려지기도 한다<sup>176</sup>. 이로 인해 안언길은 活人署의 別坐(종5품)에 제수된다<sup>177</sup>.

광해군 11년에는 의관들의 대대적인 포상시에 兒馬 1필을 하사받는다<sup>178</sup>.

안언길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광해군 15년에 발생했던 ‘下敎 발설 사건’과 관련한 기사인데, 이 일로 그는 다른 의관들과 함께 推鞠되어 祿 1등을 감봉 당한다<sup>179</sup>.

#### (15) 白鶴起

백학기도 光海君代에 활동하였던 鍼醫였는데, 實錄의 기록에는 백학기에 관한 기사가 2번 나온다. 백학기는 정확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남 출신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침술로 이름을 얻어서 광해군이 말을 지급해 올라오도록 한다<sup>180</sup>. 동년 9월에는 안언길과 함께 백학기에게 參上의 급료를 지급하도록 전교한 기록이 보인다<sup>181</sup>.

#### (16) 李濟仁

172) 『朝鮮王朝實錄』의 CD-ROM에서는 ‘宋彦吉’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후 ‘宋彦吉’이란 인물은 다시 거론되지 않는다. 아마도 ‘宋’과 ‘安’의 字形이 흡사하여 實錄 자체의 誤植이거나, 아니면 國譯작업이나 CD-ROM 작업시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본고에서 ‘宋彦吉’을 ‘安彦吉’의 오식으로 보고 고쳐 기술하였다.

173) 광해군 8년 1월 17일.

174) 參上: 文武官 堂下 정3품에서 6품에 이르기까지의 관원. 參內라고도 함. (參下: 文武 7품 이하의 관원.)

175) “침의(鍼醫) 안언길(安彦吉)과 백학기(白鶴起) 등에게 모두 참상(參上)의 요미(料米)를 지급하는 일을 착실히 거행하라고 해조에 말하라.” (광해군 8년 9월 13일)

176) 광해군 8년 12월 9일, 9년 3월 4일.

177) 광해군 9년 3월 26일.

178) 광해군 11년 12월 13일.

179) 광해군 15년 2월 19일. 자세한 내용은 허임의 각주내용을 참조할 것.

180) 광해군 8년 1월 17일.

181) 광해군 8년 9월 13일. 안언길의 각주를 참조할 것.

이제인은 光海君代의 鍼醫로 實錄의 기록에는 4번 기사가 나타난다. 광해군 11년 9월 김정과 함께 鍼醫 이제인을 實職에 제수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며<sup>182)</sup>, 이로 인해 活人署의 別提(正從 6品)에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sup>183)</sup>. 동년 12월에는 醫官들의 대대적인 포상시에 勳 1장을 하사받기도 한다<sup>184)</sup>. 특이하게 2년 뒤에는 폭력사건의 피해자로 2차례 언급되는 기록을 남긴다. 당시 이제인은 差備門<sup>185)</sup>안에서 왕명을 기다리다가 慶平君(慶平君)<sup>186)</sup>의 노비들에게 무차별 몽둥이질을 당하게 되는데, 광해군은 “요사이 궁가(宮家)의 폐단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백성들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이제인은 實職을 갖고 있는 벼슬 아치인데…差備門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노비를 풀어 마구 짓밟고 몽둥이질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었으니”라고 하면서 慶平君을 推考하고 그 하인들은 잡아들여 중벌에 처하게 한다<sup>187)</sup>.

### (17) 裴以龍

배이룡도 光海君代에 활약하던 鍼醫였다. 實錄의 기록 가운데 배이룡에 관한 기사는 2번 나온다. 광해군 11년 9월 배이룡을 實職에 제수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며<sup>188)</sup>, 동년 12월 醫官들의 대대적인 포상시에 鍼醫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兒馬 1필을 하사받는다<sup>189)</sup>.

### (18) 鄭大鵬

정대봉은 光海君代와 仁祖代에 활동하였던 鍼醫였다. 광해군 11년, 대대적인 醫官들의 포상시에 鍼醫 정대봉에게 兒馬 1필을 하사하라는 전교가 있었다<sup>190)</sup>. 이후 정대봉은 음성 현감(陰城縣監)<sup>191)</sup>에 제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仁祖代에 들어와 昭格署<sup>192)</sup>의 부활과 관련 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인조 8년, 음성현감 정대봉이 소장을 올려 임진왜란 이후 폐기된 소격서를 다시 회복시키길 건의하는데, 그는 天變, 旱災, 變방의 환란이 끊임없는 것은 하늘을 섬김이 경건하지 못해서이니 소격서를 다시 설치하여 道教의 제사인 醮祭를 올려야 한다고 주청한다<sup>193)</sup>. 그러나 儒敎理念에 투철한 사대부 관리들은 정대봉을 “본디

182) 광해군 11년 9월 10일.

183) 광해군 13년 4월 21일의 기록에 ‘活人署 別提 李濟仁’이란 언급에 근거함.

184) 광해군 11년 12월 13일.

185) 差備門: 왕이 항상 거처하는 궁인 便殿의 正門.

186) 慶平君: 宣祖와 온빈 한씨 사이에 난 왕자.

187) 광해군 13년 4월 21일, 23일.

188) 광해군 11년 9월 10일.

189) 광해군 11년 12월 13일.

190) 광해군 11년 12월 13일.

191) 陰城: 忠淸道 忠州牧 陰城縣. 지금의 충북 음성군.

192) 昭格署: 일월성신(日月星辰)에게 지내는 道教의 초제(醮祭)를 맡아보는 관아.

193) 인조 8년 8월 2일.

무식한 사람으로서 의류(醫流)로 발신하여...”라고 성토했면서 정대봉의 이름을 아예 사판(仕版)<sup>194</sup>에서 삭제하길 주장한다. 인조는 소격서의 부활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대봉의 처벌도 “求言<sup>195</sup>에서 나온 것”이라 하면서 받아주지 않는다<sup>196</sup>.

### (19) 李秀民

이수민은 光海君代 활동하던 鍼醫로 實錄의 기록에는 1번 나타난다. 광해군 11년 여러 의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포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鍼醫로서 이수민이 거론되면서 그에게 활 1장을 하사하게 한다<sup>197</sup>.

### (20) 李大儉

이대검은 鍼醫로 光海君代에 1번, 仁祖代에 1번 기록이 나온다. 광해군 11년에 있었던 醫官들의 대대적인 포상 전교 가운데 ‘鍼醫 이대검’이 거론되며, 그에게 활 1장을 하사한 내용이 나타난다<sup>198</sup>. 그러나 仁祖 초에 이르러 이대검은 박홍구의 역모사건과 연루되어 형인 이대온(李大濫)과 더불어 사형에 처해진다<sup>199</sup>.

### (21) 李馨益

이형익은 仁祖代 활동하였던 鍼醫로 士族 출신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의 명부인 『司馬榜目』에 동생 李馨益가 生員에 합격한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sup>200</sup>. 『司馬榜目』에서는 이형익의 부친이 李元白으로 품계가 어모장군(禦侮將軍)<sup>201</sup>, 관직이 忠佐衛 副護軍<sup>202</sup>에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다.

이형익은 고향이 大興(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으로 당시 鍼術로 이름이 알려져서 내의원의 천거를 통해 醫官에 봉직하게 되는데, 『仁祖實錄』 가운데 의관으로서는 가장 빈번한 출현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신임을 얻어 인조가 죽기 전까지 약 16년간 치료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는데, 대부분 燔鍼을 시술하였다. 實錄의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94) 仕版: 벼슬아치의 명단.

195) 求言: 國政에 대하여 臣下나 士林들이 直言을 구하는 것.

196) 인조 8년 8월 9일, 19일.

197) 광해군 11년 12월 13일.

198) 광해군 11년 12월 13일.

199) 인조 2년 11월 8일.

200) 仁祖 11년 增廣試. (서울시스템에서 개발한 『司馬榜目』 CD-ROM을 참조함.)

201) 禦侮將軍: 조선시대 무산계(武散階)의 하나. 무관 정3품 당하관의 관계명(官階名).

202) 忠佐衛 副護軍: 忠佐衛는 조선 시대 중앙 군사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五衛 중의 하나이며, 副護軍은 五衛에 속했던 종4품 무관직. (五衛: 조선시대 군대 조직으로 義興衛·龍驤衛·虎賁衛·忠佐衛·忠武衛를 말함.)

근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는 龍仁縣令을 거쳐 金浦郡守에까지 제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203</sup>). 이형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 별도로 기술하고자 한다.

## (22) 潘忠翼

반충익은 仁祖代에 활동했던 鍼醫로 實錄 가운데 1번 기록되어 나온다. 記事 내용에 ‘陰城의 村醫’라 한 것을 보건대 음성에서 불러 올라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醫官으로 제수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인조 17년 8월 藥房都提調로 있던 崔鳴吉이 이형익과 함께 반충익을 인조에게 추천하여 진단하게 한다. 반충익은 인조에게 邪祟의 기운이 있는 듯하다고 하면서 이형익의 치료에 달려있다 말한다. 사관의 평에는 이들 두 사람을 ‘요괴한 무리’라 칭하면서 비난하는 글을 덧붙이고 있다<sup>204</sup>).

## (23) 柳達

유달은 仁祖代의 鍼醫였다. 인조 17년 청나라에 억류되어 있는 소현세자를 귀근(歸覲)<sup>205</sup>하게 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sup>206</sup>), 이때 유달이 거론된다. 실록의 기록에는 별다른 언급이 나오질 않지만 아마도 소현세자가 심양에 끌려갈 때 같이 수행했던 침의(鍼醫)로 생각된다. 유달은 심양에 머물면서 세자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여러 인사들에게도 의술을 베풀어 상당한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유달은 소현세자가 귀국하기 이전에 이미 조선에 돌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청나라에서 황제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재와 명의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으로 다시 파견되기도 하였다<sup>207</sup>).

203) 李圭根, 朝鮮時代 醫療機構와 醫官, 東方學志, 104권, 1999, p. 116. 김인숙의 논문에서 재인용 함. (김인숙, 인조의 질병과 번침술,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13권 2호, 2004, p. 200.)

204) “상이 침을 맞으려 하였는데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최명길(崔鳴吉)이 아뢰기를 ‘이형익(李馨益)·반충익(潘忠翼) 등으로 하여금 혈색을 살펴보게 하소서.’ 하였다. … 충익이 아뢰기를 ‘오늘 안색을 살펴보니 사수(邪祟)의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이는 형익이 침작하여 치료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반충익은 음성(陰城)의 촌의(村醫)이다. 이형익과 서로 수작하여 날마다 요사스러운 말을 올려 주상의 의혹을 초래하였으니,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 어찌하여 사질(邪疾)이라고 하면서 요괴(妖怪)한 무리들을 널리 불러와 망령되어 번침(燔鍼)을 놓게 한단 말인가…’ (인조 17년 8월 18일)

205) 귀근(歸覲): 집에 돌아가 아버지를 뵙는 것.

206) “상께서 옥체가 편치 못하신 지 오래되어 온 나라가 허둥지둥하는데, 하물며 동궁(東宮)과 대군(大君)이 이역에 머물러 계시니, 인정과 사리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이미 침을 맞는데다가 이어서 저주하는 번고까지 있었으니, 청국에서 이 사실을 듣고는 반드시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보면, 귀근을 허락할 가망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유달(柳達)이 침술(鍼術)로 청나라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고 속히 불러올 것 같으면, 귀근을 허락케 하는 데 일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인조 17년 8월 16일)

207) “청인이 세자의 관소(館所)에다 말하기를, 황제가 풍증(風症)으로 머리가 어지러우니 죽력(竹瀝)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하고 또 명의(名醫)를 보자고 요구하였다. 상이 명하여 침의(鍼醫) 유달(柳達)과 약의(藥醫) 박군 등을 보냈다.” (인조 21년 4월 6일)

표1.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 鍼醫의 활동1

의원명	활동시기	출신 /고향	官職 · 品階의 제수	徵戒와 褒賞	特記事項
吳忭	宣祖				최초로 鍼醫로 거론
吳元宗	宣祖	龍仁		역적모의 사건 연루로 능지처참(선조 27년 1월)	醫官이 아님.
朴春茂	宣祖		林川郡守 京畿 내의 地方官 仁川府使 富平府使	무단 출타로 推考(선조 31년 9월)	
鄭希生	宣祖			직무이탈로 파직(선조 29년 11월)	
沈發	宣祖		典牲署 主簿	내의원 소속시 무단 출타로 推考(선조 31년 9월)	
許任	宣祖, 光海君	羅州	通政大夫 麻田郡守 實僉知 永平縣令 楊州牧使 富平府使 南陽府使	資級이 加資(선조 37년 10월) 加資(광해군 4년 8월) 호종의 공으로 3등의 錄勳에 수록(광해군 4년 9월) 일찍 들어오라는 왕명을 받들지 않아 推考(광해군 6년 6월) 資級을 더해 받음(광해군 8년 11월) 熟馬 1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하교 누설사건으로 귀향조치, 祿 1등을 감봉(광해군 15년 2월)	樂工 許億福의 孽子로 2품의 관직까지 오름. 『鍼灸經驗方』 저술.
金榮國	宣祖, 光海君	金溝	陽川縣監 靑陽縣監 果川縣監 京畿道內의 守令	偏頭痛 치료로 인한 포상으로 陞職(선조 37년 10월)	
南嶽	宣祖, 光海君		長興庫直長 通政大夫 陽城縣監 陰竹縣監	偏頭痛 치료로 인한 포상으로 資級이 加資(선조 37년 10월)	士族 출신
柳季龍	宣祖, 光海君		懷德縣監 禮賓寺 主簿 同福縣監 京畿道 守令職	下敎 누설로 推鞠, 祿 1등을 감봉(광해군 15년 2월)	士族 출신 脈學에도 조예가 깊음.
朴仁荃	宣祖				倭의 회답사행에 동반함.
金徵( 全徵 · 金澄)	光海君	沃川		軍職에 붙여 급료지급(광해군 4년 9월) 實職에 제수(광해군 11년 9월)	
金龜祥	宣祖, 光海君	居昌	典設司 別坐 內醫院 主簿 尙衣院 判官 砥平縣監	학정과 직무수행 부진으로 현감직 파직(광해군 12년 5월)	庶孽

표2.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朝鮮中期 鍼醫의 활동2

의원명	활동시기	출신 /고향	官職·品階의 제수	徵戒와 褒賞	特記事項
柳大鳴	光海君		衿川縣監	여러 해 침놓은 공로로 資級을 더해 받음(광해군 8년 11월) 兒馬 1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下敎 누설로 推鞠, 祿 1등을 감봉(광해군 15년 2월)	孽子
安彦吉	光海君		活人署의 別坐	參上의 급료를 지급(광해군 8년 9월) 兒馬 1필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下敎 누설로 推鞠, 祿 1등을 감봉(광해군 15년 2월)	
白鶴起	光海君	嶺南		參上의 급료를 지급(광해군 8년 9월)	
李濟仁	光海君		活人署의 別提	활 1장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폭력사건의 피해자(광해군 13년 4월)
裴以龍	光海君			兒馬 1필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鄭大鵬	光海君 仁祖		陰城縣監	兒馬 1필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昭格署의 부활과 관련하여 논란을 제기.
李秀民	光海君			활 1장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李大儉	光海君 仁祖			활 1장을 하사(광해군 11년 12월)	박흥구의 역모사건과 연루되어 사형.
李馨益	仁祖	大興	龍仁縣令 金浦郡守		士族 출신
潘忠翼	仁祖	陰城			인조의 병을 邪祟로 진단. 소현세자의 심양 억류시 수행하여 淸國에 鍼術로 이름을 떨침. 淸國 황제의 병으로 다시 파견.
柳達	仁祖				

## 2. 鍼醫의 地方官 진출과 社會的 位相

조선중기 鍼醫들은 至近의 거리에서 왕의 질병을 조리하고 치료함으로서 특별한 총애와 신임을 받았다. 이로 인해 堂上官의 品階에 오르기도 하고(許任·南嶸), 扈從功臣에 錄勳되기도 하였으며(許任), 말(馬)이나 활 등의 하사품을 포상으로 받기도(許任·柳大鳴·安彦吉·李濟仁·裴以龍·鄭大鵬·李秀民·李大儉) 하였다.

鍼醫들은 대부분 內醫院에 소속되어 主簿(중6품)나 直長(중7품), 奉事(중8품) 등의 직책

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208)</sup>, 때로는 軍職에 붙여(金榮國·全徵·安彦吉·南嶸) 入侍하게 하기도 하였다.

鍼醫들은 왕실 치료의 공로로 지방관에 진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중기 鍼醫들의 지방관 진출 내용을 보면 거의가 경기도 지역에 제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209)</sup>. 도별로 보면 경기도지역이 14곳이며, 충청도가 4곳, 전라도가 1곳이 된다. 이렇게 鍼醫들의 지방관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은 鍼醫를 가까운 지역에 임명함으로써 필요시 불러올려 침을 맞고자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침을 놓기 위해 오가는 폐단을 덜어주기 위하여 충청도 林川郡守로 재직하던 박춘무를 경기도 지역의 지방관으로 바꾸기도 하였고<sup>210)</sup>, 침을 잘 놓는 김영국을 외방지역인 충청도 靑陽縣監으로 제수해서는 안 된다는 사간원의 건의도 볼 수 있다<sup>211)</sup>.

표3. 朝鮮中期 鍼醫들의 地方官 진출지역

지역	地方官職	鍼醫名
京畿道	仁川府使	朴春茂
	富平府使	朴春茂, 許任
	南陽府使	許任
	楊州牧使	許任
	麻田郡守	許任
	永平縣令	許任
	陽川縣監	金榮國
	果川縣監	金榮國
	陽城縣監	南嶸
	陰竹縣監	南嶸
	砥平縣監	金龜祥
	衿川縣監	柳大鳴
	龍仁縣令	李馨益
	金浦郡守	李馨益
忠淸道	林川郡守	朴春茂
	靑陽縣監	金榮國
	懷德縣監	柳季龍

208) “內鍼醫들은 注簿, 別坐 증에 임명되기도 했는데, 이는 종5·6·7품의 당하관의 직책이었다.” (박문현의 같은 논문, 75쪽.)

209)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도 의관들은 주로 경기도의 지방관에 제수된다. 파견된 고을은 고양이가 25회로 가장 많고, 과천이 22회, 금천(衿川: 지금의 시흥)이 20회, 마전에는 12회, 이천과 김포가 10회, 안산과 적성, 양지, 용인에는 각각 9회씩 보내졌다. (김양수의 같은 논문, 220쪽)

210) 선조 30년 4월 21일.

211) “청양 현감(靑陽縣監) 김영국(金榮國)은 평소 침(鍼)을 잘 놓기로 이름이 난 사람이니 이처럼 옥후(玉候)가 미령하신 때에는 멀리 외방 고을로 부임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선조 37년 6월 25일)

	陰城縣監	鄭大鵬
全羅道	同福縣監	柳季龍

이렇게 鍼醫들은 치료의 공로로 인해 여러 지역에 지방관으로 진출하였는데, 사대부 관료들의 거센 반발과 탄핵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것은 당시에 사회 전반의 의학을 비롯한 기술직 천시의 풍조가 만연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국가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사대부들을 기술학 연구에 참여시킬 만큼 기술학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러나 15세기 말 士林이 정계에 진출하면서 관념적인 기술직 천시풍조로 인하여 양반은 醫員이 되기를 꺼려하였다<sup>212)</sup>. 이러한 조선초기 사회의 개방성과 유연성은 조선전기 의관출신 가운데 고관에 오른 사례<sup>213)</sup>에서도 볼 수 있다.

- ① 李敏道: 太祖 때 개국공신에 오름.
- ② 盧重禮: 世宗 때 同知中樞府事 (중2품)
- ③ 金尙珍: 世祖 때 嘉靖大夫(2품)
- ④ 全循義: 世祖 때 嘉靖大夫(2품)
- ⑤ 權纘: 成宗 때 工曹判書(2품)

그러나 조선중기에 들어와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전과 달리 폐쇄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사대부들의 경직성은 의원들의 지방관 진출반대에서도 드러나는데, 鍼醫들의 지방관 진출에서도 예외 없이 대신관료들의 거둬들인 비판을 볼 수 있다.

鍼醫 김영국이 靑陽縣監과 陽城縣監에 제수되었을 때는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인품의 경망스러움과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 다는 이유를 들어 遞差를 건의하는데 모두 받아들여진다.

“청양 현감(靑陽縣監) 김영국(金榮國)은 평소 침을 잘 놓기로 이름이 난 사람이니 이처럼 옥후(玉候)가 미령하신 때에는 멀리 외방 고을로 부임하게 해서 안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품이 경망스러워 일찍이 수령으로 있을 적에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많았으니, 체차시키게 하소서.” (선조 37년 6월 25일)

“헌부가 아뢰기를 ‘양성현감(陽城縣監) 남영(南嶸)은 의술(醫術) 출신(出身)으로 행정(行政)을 몰라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몸가짐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모두 모양이

<sup>212)</sup> 金良洙,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 진출, 東方學誌, 104권, 1999, p. 210.

<sup>213)</sup> 韓永愚, 조선후기 中人에 대하여, 韓國學報, 45집, 1986, p. 77. (김양수의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 진출」, 192쪽에서 재인용.)

아니어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있으므로 다 떠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윤택한다고 답하였다.” (선조 40년 6월 21일)

허임의 楊州牧使 제수 시에는 비천한 신분 출신임을 거론하고 있는데, 특히 이전에 허임이 麻田郡守와 永平縣令에 임명되었을 때 지방관아의 下吏들이 보여준 태도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官奴의 庶孽 출신인 허임을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허임은 자신의 임무를 결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새 목사 허임(許任)은 아버지는 관노(官奴)이고 어머니는 사비(私婢)로, 비천한 자 중에서도 더욱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데 침술(鍼術)로 발신(發身)하여 녹훈되고 봉군(封君)되기까지 하였으니, 분수에 이미 넘친 것으로, 국가에서 공로에 보답함이 너무 지극한 것입니다. 선조(先祖) 때에도 마전 군수(麻田郡守)에 제수되자, 본군의 하리(下吏)들이 그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한 사람도 와서 맞이해 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때문에 아뢰어 체직시켰습니다. 영평(永平)의 수령이 되어서도 제대로 하리들을 장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광해군 9년 2월 18일)

마찬가지로 庶孽 출신인 김귀상도 典設司別坐에 제수되었으나 신분을 차별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것을 볼 수 있으며<sup>214)</sup>, 이후 砥平縣監職에 제수 되었을 때도 미천한 醫官이 사대부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고 비판받아 물러난 것을 볼 수 있다.

“김귀상(金龜祥)은 미천한 한 의관(醫官)으로서, 백리(百里)를 다스리는 수령이 되었으니 정사가 매우 문란합니다. 그 직에 나아가서는 마치 모기가 산을 짊어 진 것과 같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일마다 서툴러서 백성들이 그 폐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 하찮은 귀상 한 녀석을 아직도 사대부 가운데 두고서 논계하니, 양사와 방백의 처지에서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속히 그대로 유임하도록 한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광해군 12년 5월 17일)

이렇게 의학을 비롯한 기술직의 천시로 인해 鍼醫들의 지방관 진출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당시 鍼醫들의 보잘것없는 신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중기에 활동했던 鍼醫들 22명의 신분을 살펴보면<sup>215)</sup>, 士族출신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은 3명(南嶸·柳季龍·李馨益) 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良民이었으며, 허임은 賤民 출신으로 생각된다<sup>216)</sup>. 그 가운데 庶孽로 거론된 인물은 3명(許任·金龜祥·柳大鳴)인데, 특히 허임

214) 선조 40년 5월 7일.

215) 醫官이 아니며 왕실의 치료에도 참여치 않은 吳元宗은 제외함.

216) 朝鮮中期는 아직 ‘中人’계층이 완전하게 형성된 시기가 아니다. 朝鮮初期는 신분구조가 良·賤制였으며,

은 官奴樂工人 아버와 私婢인 어머니 사이의 庶孽로 그 賤視가 극심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회전반의 기술적 천시와 신분차별로 인해 鍼醫들이 천대받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대부들의 전반적인 폐쇄성과 경직성에 반해 당시 임금들이나 內醫院에서는 의원의 대우에 있어 비교적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 2년 12월에 광해군이 다른 鍼醫인 김영국·김귀상 등과 함께 沃川 사는 김정(金徵)을 말을 지급해 올라오도록 한 것을 볼 수 있고<sup>217)</sup>, 광해군 8년에는 침술에 특기가 있는 안언길을 軍職에 붙여 내의원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정확한 지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남 출신으로 침술로 이름난 백학기를 말을 지급해 올라오도록 한 것이다<sup>218)</sup>. 또한 仁祖代의 이형익은 고향이 大興(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이었는데, 당시 鍼術로 이름이 알려져 내의원의 천거를 통해 醫官에 봉직하게 된다. 반충익도 ‘陰城의 村醫’라 한 것을 보건대 음성에서 불러 올라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기록들은 醫員取材를 통한 醫官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의원 가운데 특별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얼마든지 등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IV. 李馨益의 燔鍼術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형익은 仁祖代 활동하였던 鍼醫로 士族 출신으로 여겨진다. 그는 고향이 大興(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으로 여겨지는데, 당시 鍼術로 명망이 높아 내의원의 천거를 통해 醫官에 봉직하게 된다. 이형익은 인조의 신임을 얻어 『仁祖實錄』 가운데 의관으로서의 가장 빈번한 출현횟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조가 죽기 전까지 약 16년간 치료를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주로 燔鍼을 시술하였다. 근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형익은 龍仁縣令을 거쳐 金浦郡守에까지 제수되었음을 볼 수 있다<sup>219)</sup>.

### 1. 李馨益에 관한 實錄의 기록

實錄 가운데 이형익에 관한 기사는 인조 10년 11월 2일에 처음 나타난다. 대흥(大

---

兩班도 사대부계층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有官職者만을 의미하는 명칭이었다. 그러나 朝鮮中期에 들어와 士林이 집권하면서 기술적 천시가 시작되었고, 士大夫 계열에 속하지 못한 庶孽 등이 기술직을 전담하게 되면서 점차 세습화되어 中人家門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朝鮮後期에 와서는 계층간의 이동이 전혀 불가능한 신분의 완전 고착화를 이루게 되어 兩班·中人·良人·奴婢의 4개 신분으로 고정되게 된다. 따라서 朝鮮中期의 鍼醫들을 바로 ‘中人’의 신분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점차 庶孽들이 참여하는 등 中人계층의 형성이 시작됨을 볼 수 있다.

217) 광해군 2년 12월 24일. 김영국의 주석을 참조할 것.

218) 광해군 8년 1월 17일.

219) 전술한 3장의 ‘李馨益’의 항목을 참조 할 것.

興)220) 땅에 이형익이란 사람이 침술로 이름을 얻었는데 내의원에서 불러 오고자 하므로 급료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흥(大興) 땅에 이형익(李馨益)이란 자가 있어 약간 침법(鍼法)을 알아 사기(邪氣)를 다스린다고 세상 사람을 현혹했는데, 남의 괴질(怪疾)을 치료하여 간혹 효험을 본 경우도 있었다. 이때 와서 내국(內局)이 아뢰기를 ‘이형익의 침술이 매우 묘하다고 하기에 본원(本院)이 불러 오려고 했으나, 먼 데에 사는 사람이라서 돈을 마련할 곳이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급료(給料)토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괴이하고 허탄한 술법을 추장(推獎)할 필요가 없으니 급료하지 말라.’ 하였다.”

이러한 요청은 인조에 의해 곧바로 거부되었으나, 결국 이듬해 1월 내의원의 주청을 받아들여 이형익에게 봉록을 주고 서울에 올라와 머물도록 한다221). 이형익은 서울에 불러 올라온지 5일 만에 처음으로 인조에게 번침을 놓는다.

“상이 이형익(李馨益)에게 침을 맞았다. 이때 상이 편찮은 지 오래였는데 궁중에서는 저주를 입은 탈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형익을 불러 번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11년 1월 22일)

이러한 번침요법은 처음 시작부터 논란거리가 된다. 처음으로 번침을 놓은 한 달 뒤에 옥당222)에서 이형익의 치료법을 괴이한 방법이라 말하면서 이형익에게만 치료를 맡기지 말고 여러 의원들에게 맡겨 보통 처방에 의해 치료하도록 주청한다223). 옥당의 주청 하루 뒤에는 간원이 이형익을 ‘요망한 의원’으로 표현하며 침을 맞을 때 약방 및 승지와 사관을 함께 입시하도록 아뢴다224). 그해 10월의 기록에는 이형익이 번침을 놓았는데 좌우의 혈자리가 조금 차이가 나서 이형익과 입시한 의원들을 함께 추고(推考)225)하기도 하였다226). 당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간원들은 국문227)하여 중죄로 다스릴 것을 주청하였으나

220) 대흥(大興): 忠淸道 洪州牧 大興縣. 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 일대에 해당.

221) “내의원(內醫院)이 침의(鍼醫) 이형익(李馨益)에게 봉록을 주어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형익은 대흥(大興) 사람인데, 그 위인이 허탄하고 망녕되어 번침술(燔鍼術)로 병을 고친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었다.”(인조 11년 1월 17일)

222) 옥당(玉堂): 弘文館의 별칭.

223) “옥당이 차자를 올리기를 ‘... 근일 성상께서 침을 맞으시면서 이형익(李馨益)의 손에 맡겨 경솔히 괴이한 방법을 쓰다 하니 매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사대부들 중에 그의 침술을 쓰는 자가 있으나, 일일이 효험을 보았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 ...침술이 괴이하고 허탄하여 믿고 쓸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 옥체가 미령하신지 이미 여러 달이 지나 ...날로 침을 맞고 땀을 뜨고 계시니 영위(榮衛)를 소모할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 성명께서는 널리 의원들에게 물어 모든 침과 약을 일체 보통 처방에 의하여 조용히 치료하여 점차 효험을 거두게 하고 오활하고 괴이한 사람을 통렬히 물리쳐 사람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소서...’” (인조 11년 2월 23일)

224) 인조 11년 2월 24일.

225) 추고(推考): 罪過가 있는 관원을 신문하여 그 죄상을 고찰함. 관원에 대한 일종의 징계로 사용됨.

226) “상이 미령한지 오래되어 의원 이형익에게 번침(燔鍼) 치료를 자주 받았는데, 간혹 한 혈(穴)씩 좌우에

인조는 따르지 않고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인조 11년 이형익이 번침을 놓기 시작한 이후 인조 16년까지는 이형익에 관한 기사 나오지 않는다. 이형익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인조 17년이다. 인조 17년은 주로 이형익의 번침시술 기록과 함께 궁중의 저주와 관련한 언급이 나타난다. 8월 18일의 기록에는 왕이 침을 맞으려 하자 최명길(崔明吉)이 이형익과 반충익(潘忠翼)으로 하여금 혈색을 살피도록 건의하였는데, 반충익은 인조에게 사수(邪祟)의 기운이 있는듯하다고 아뢰었고, 지난 번과 침을 맞은 혈수(穴數)가 다르다는 인조의 하문에 이형익은 자기 소신껏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청한다. 이 때 덧붙인 사관의 평에는 이형익과 반충익이 요사스러운 말로 왕을 현혹하여 망령된 치료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라 한탄하고 있다<sup>228</sup>).

인조 21년에 와서도 이형익의 번침시술은 계속되는데<sup>229</sup>, 동년 8월에 행도승지 김육이 번침시술이 불가하다고 아뢰었으나<sup>230</sup> 인조는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으니 그만둘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하루 뒤인 8월 9일에도 다시 간원이 번침요법에 맹목적으로 의지함을 비판하며 불가함을 아뢰었으나<sup>231</sup>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처럼 번침요법의 부당함이 여러 차례 상주되었으나 인조는 이후에도 같은 달에만 모두 8차례 번침을 맞은 기록이 나타난다<sup>232</sup>).

인조 22년에는 영의정 심열 등이 번침의 해로움을 ‘金火의 독’으로 표현하면서 10년 가까이 번침을 맞았지만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를 중지하고 약제를 통해 치료할 것을 상주한다<sup>233</sup>. 인조는 이러한 주청에 침을 맞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답하였으나 약 5

조금 차이가 나게 놓았다. 이에 상이 그 시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의관에게 물었다. 약방(藥房)이 침을 놓은 의관과 그때 동참했던 의관들을 함께 추치할 것을 계청하니, 상이 따랐다. …간원도 침술 의원을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주라고 주청했으나, 상이 끝내 따르지 않았다.” (인조 11년 10월 7일)

227) 국문(鞫問): 중대한 죄인을 왕명에 의해 위관(委官)을 정해 국청(鞠廳)에서 신문하는 것.

228) 앞장의 반충익의 각주 내용을 참조할 것.

229) “상이 이형익(李馨益)에게 번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21년 2월 4일)

“상이 번침(燔鍼)을 맞은 지가 20여 일이 지났는데 이날에 와서야 정지하였다.” (인조 21년 2월 25일)

230) “행 도승지 김육이 아뢰기를 ‘…이 번침(燔鍼)의 방법만은 삼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번침의 법은 비록 고방(古方)이 있기는 하나 마음으로 통하여 묘리를 얻은 자가 아니면 선불리 쓸 수가 없는데 어찌 차마 이 방법을 옥체에 시험한단 말입니까.’ 하니 답하기를 ‘번침은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으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인조 21년 8월 8일)

231) “삼가 생각건대 상상의 뜻은 해묵은 질환이라 뿌리가 이미 깊이 박혔으며 예사로운 감기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침을 맞으시고 살을 지지는 고통도 꺼리지 않으시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신들의 소견은 약을 폐하고 침만 맞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형익(李馨益)의 의술 정도는 감히 알 수 없으나 어찌 성후(聖候)를 치료하는 막중한 일을 오로지 그의 손에 맡기고 더 이상 여러 사람의 뜻을 널리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32) 인조 21년 8월 12일, 21일, 24일, 26일, 27일, 29일, 30일, 9월 5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라고 기록함.

233) “성상께서는 미령하신 이후로 … 그릇되고 헛된 알팍한 의술로 만전의 효험을 거두시기 위하여 금화(金火)의 독을 옥체에 시술하기까지 하셨는데, 10년이 다 되어도 병근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 오늘날까지 수없이 침을 맞으셨는데도 효험은 조금도 없으니 … 빨리 침을 맞는 것을 중지하고 … 당대의 명의로서 항간에서 이미 시험하여 믿을 만한 유후성(柳後聖)과 이찬(李燦) 같은 무리를 널리 모아 증세에 맞는 약제를 의논해 정하여 장기적으로 확실한 공을 거두도록 하소서.” (인조 22년 2월 4일)

개월 뒤에 낙상으로 인해 다시 침을 맞기 시작한 것<sup>234</sup>)으로 보인다.

인조 23년의 기록들은 대부분 인조가 이형익을 통해 침을 맞거나 뜸을 뜬 것, 그리고 조정대신 및 사관들이 이러한 치료법의 부당성을 아뢰는 것과 이형익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약방 도제조 김류 등이 중완(中腕)에 뜸질할 것을 청한 이형익을 징계하도록 주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으며<sup>235</sup>), 4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은 기록들이 나타난다<sup>236</sup>). 5월의 기록에는 약방이 침을 맞는 일로 계품(啓稟)<sup>237</sup>하고 이형익을 불렀는데 오지 않으므로 인조가 침을 맞지 않기도 한다<sup>238</sup>). 이런 사실은 당시 약방의 都提調를 비롯하여 여러 대관들과 이형익이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조는 직후 여전히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았으며<sup>239</sup>), 탁핵을 주청하는 상소도 계속된다<sup>240</sup>). 6월 12일의 기록에는 이형익이 경외기혈(經外奇穴)인 요안혈(腰眼穴)<sup>241</sup>에 뜸을 뜬 기록이 나타난다<sup>242</sup>). 요안혈에 뜸을 뜬 기록은 이 때 처음 나타나나 3년 뒤인 인조 26년에도 다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인조 24년에는 전복구이를 먹다가 독이 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소위 ‘전복구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세자빈 강씨 측근 궁인들과 어주나인(御廚內人)들이 賜死處刑되고 소현세자빈 강씨도 3월 15일에 사사된다. 이 때 인조는 자신에게 있던 上熱感을 독을 먹은 것에서 온 증세로 여겨 이형익 등이 올린 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복용하기까지

234) “상이 후원(後苑)에 나가 노닐다가 넘어져 몸을 다쳐서 침을 맞았다.” (인조 22년 7월 16일)

235) “상이 열 세 군데의 혈(穴)에 침을 맞았다. 약방 도제조 김류와 좌부승지 이행우가 아뢰기를 ‘육체에 침을 놓고 뜸질을 하는 일이 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형익(李馨翕)은 신들 및 여러 의원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입시한 계제에 갑자기 중완(中腕)에 뜸질할 것을 청하였으니, 그 어리석고 망령되고 꺼리낌 없는 풍조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하게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인조 23년 2월 30일)

236) “이때 상이 날마다 이형익(李馨翕)에게서 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1일)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0일)

“상이 번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4월 23일)

237) 계품: 임금께 아뢰. 啓奏. 啓聞

238) “약방이 상이 침을 맞을 일로 계품하고 또 이형익을 불렀는데, 이형익이 대간의 논핵을 칭탁하여 오지 않으므로 상이 편치 않게 여겨 마침내 침을 맞지 않았다.” (인조 23년 5월 3일)

239)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23년 5월 9일)

“상이 번침을 맞았다.” (인조 23년 5월 15일)

240) “양사가 합계하기를 ‘삼가 보건대 약방(藥房)의 계사(啓辭) 가운데 자시(子時)와 해시(亥時) 사이에 뜸질을 하여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어 매우 놀라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일개 요사스러운 의원의 말만을 인하여 시험할 수 없는 일을 이와 같이 행한단 말입니까. … 한밤중에 뜸질하라는 명을 정지하소서. … 이형의 등을 속히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고, 옥당도 차자를 올려 논쟁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인조 23년 6월 12일)

241) 요안(腰眼): 제4, 제5요추극상돌기 양방 3.5-4촌 부위의 經外奇穴.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고환염, 요통, 당뇨, 산부인과질환, 頻尿, 虛勞 등의 병증에 적용된다.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0. p. 756.) (張大千, 中國鍼灸大辭典, 北京, 北京體育學院出版, 1988, p. 985.)

242) “밤중에 상이 요안혈(腰眼穴)에 뜸질을 하였는데, 이형익 혼자서 환관 한 사람과 함께 입시하였고… 상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던 중 대궐 안에 마침 저주의 변고가 있자, 이형익이 사악한 빌미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번침(燔鍼)을 놓아드렸는데, 이것이 약간 효과가 있어 마침내 총애를 받아서 상사(賞賜)한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 …”

한다<sup>243</sup>).

인조 25년에는 번침을 맞았다는 치료기록들이 계속된다. 이러한 번침치료 기록은 2월에 5차례<sup>244</sup>, 11월에 12차례<sup>245</sup>, 12월에 9차례<sup>246</sup>나 집중되어 나타는데, 빈번한 침치료로 인해 의관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하였다<sup>247</sup>. 이 해 11월 11일에는 이형익이 번침을 놓으면서 속히 궁을 옹기도록 인조에게 건의하고 있는데, 이 때 이형익은 “묻혀 있는 흉악한 물건을 다 파내기 어려우므로 이 궁에 하루라도 거처해서는 안 됩니다. 궁을 이어하는 효험이 침의 효험보다 빠를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형익이 여러 차례 번침을 놓았으나 치료가 여의치 않자 인조의 병세를 저주와 관련지으면서 궁여지책으로 한 말로 생각된다. 결국 인조는 다음날 창덕궁(昌德宮)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데 죽기 전까지 약 1년 6개월을 이곳에서 머물다가 사망하게 된다.

인조 26년의 기록들도 여전히 번침을 맞은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요안혈(腰眼穴)에 뜬 기록도 나타난다. 실록의 기록에는 요안혈에 뜬 목적이 사수, 즉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세를 치료하고자 한 것이며, 번침은 고질적 증세인 寒熱往來를 치료하고자 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인조는 물론 궐내의 여러 사람들이 저주와 관련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인조는 4월, 5월, 7월, 8월에 걸쳐 계속해서 번침을 맞는다<sup>248</sup>. 8월 2일의 기록에 살갓이 타는 듯한 소리가 창밖으로 들려올 정도라 표현하는 것<sup>249</sup>을 보건대, 당시 이형익의 번침은 강도가 강력했었고 따라서 번침을 맞는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해 6월 30일에는 요안혈에 뜬 기록도 나타난다. 요안혈에 뜬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3년 전인 인조 23년 6월에 이미 시행되기도 한 치료법이었다. 이때 인조는 또다시 이형익의 주청대로 한밤중에 은밀히 이형익을 불러 좌우의 요안혈에 뜬 뜸을 뜨게 하는데, 사관의 평에는 이형익의 어리석고 경솔한 인품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덧붙이고 있다<sup>250</sup>. 그러나 뜸을 뜬지 약 1달 뒤의 기록을 보면 요안혈을 이용

243) “상이 … 하교하기를 ‘이달 초부터 열이 가끔 위로 치밀어 가슴이 답답하더니 근래에 들어서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독을 먹은 데서 오는 증상인 것 같다.’ 하니 … 상이 이형익 등으로 하여금 들어와 병을 살피게 하였다. 이형익 등이 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올리니 상이 복용하였다.” (인조 24년 1월 18일)

244) 2월 17일, 18일, 20일, 22일, 23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라고 함.

245) 11월 4일, 8일, 11일, 15일, 16일, 18일, 19일, 21일, 23일, 24일, 26일, 28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라고 함.

246) 12월 1일, 2일, 4일, 7일, 8일, 11일, 13일, 15일, 20일에 “상이 번침(燔鍼)을 맞았다.”라고 함.

247) “침을 맞을 당시의 약방 도제조 이하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인조 25년 6월 24일)

248) 4월 25일, 26일, 27일, 30일에도 번침을 맞은 기록이 나타난다. 5월 2일에도 번침을 맞은 기록이 나타나며, 7월에 들어와 28일, 29일에도 번침을 맞는다. 8월에는 2일, 4일, 5일, 7일, 9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19일에 걸쳐 모두 11차례 번침을 맞는다.

249) “침을 맞을 때 옥체의 살갓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려왔다.” (인조 26년 8월 2일)

250) “한밤중에 상이 요안혈에 뜸을 떴다. 이형익이 아뢰기를 ‘요안혈에 뜸을 뜨는 것은 비밀스럽게 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했기 때문에, 한밤중이 된 뒤에 상이 은밀히 형익 등을 불러 좌우의 요안혈에 뜸을 뜨게 하여 정원에서 모르게 하였다. 형익은 인품이 어리석고 외람되며 행동거지가 추스러웠으므로 상의 앞에서 말을 가리지 않았는데, 상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았다.” (인조 26년 6월 30일)

한 뜬치료는 그다지 신통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조경이 여러 의서를 살펴보건대 요안혈에 뜬 것은 인조의 병환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형익의 죄를 추고(推考)하라는 주청을 하였으나 인조는 딱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리라는 말로 이형익을 변호한다.

인조 27년은 그 해 5월에 이르러 결국 인조가 55세로 사망한다. 사망하기 1주일 전인 5월 1일의 기록을 보면 인조가 스스로 상한(傷寒)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약방에서 감풍(感風) 증세로 약을 지어 바친 것으로 보건대<sup>251)</sup> 사망 직전 인조는 감기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조는 여전히 이형익에게 침을 맞았는데<sup>252)</sup>, 병세가 여의치 않자 여러 의관들을 불러 진찰케 하기도 하였다<sup>253)</sup>. 사망 하루 전인 5월 7일의 기록을 보면 의관들은 물론 인조 스스로도 자신의 병세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들어서면서부터 병세가 다시 위독해졌고, 다음날 유시(酉時)에 이르러 결국 창덕궁의 동침(東寢)에서 사망하게 된다. 인조의 질병치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형익은 양사(兩司)에서 그 책임을 물어 사형에 처할 것을 청했으나 선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효종의 변호로 인해 인조 사망 약 1달 보름 뒤에 경원부(慶源府)에 유배되는데 그친다<sup>254)</sup>. 그러나 이러한 유배조치도 왕대비의 위급한 증세로 인해 약 1년 7개월만에 중단되어 석방되게 된다<sup>255)</sup>.

## 2. 燔鍼術은 어떤 치료법인가?

이형익의 ‘燔鍼’에 대해 實錄에서는 ‘괴이하다’, ‘虛誕하다’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시술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김두중은 『韓國醫學史』에서 燔鍼, 火鍼, 溫鍼에 대한 차이를 논하면서 이형익의 번침술이 자침 전에 침을 달구는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뜬을 이용한 溫鍼 정도의 방법이었는지 확실한 문헌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sup>256)</sup>.

번침은 『黃帝內經』부터 수록되어 나오는 전통적 침법의 하나이다. 「素問·調經論」에 “筋에 병이 있으면 燔鍼法으로 그 아래를 劫刺하여 筋이 緊急해진 곳에 도달하게 하고, 병이 뼈에 있으면 焮鍼法과 藥熨法을 시행한다.”<sup>257)</sup>라고 하였으며, 「靈樞·經筋」에도 痺

251) 인조 27년 5월 1일.

252) “상이 침을 맞았다. 이형익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인조 27년 5월 3일)  
“상이 침을 맞았다.” (인조 27년 5월 5일)

253) “상이 의관(醫官)들을 불러 입진하게 하였다. 약방이 전 승지 이원진(李元鎭)이 약리(藥理)에 정통하다 하여 약을 의논할 때에 참여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인조 27년 5월 6일)

254) 효종 즉위년 6월 23일의 기록.

255) “왕대비의 증세가 차츰 위급해지고 있어 침의 이형익을 특별히 석방하니 말을 지급하여 들어오게 하라.” (효종 2년 1월 26일)

256)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 pp. 330-331.

257)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 p. 257.

症 치료를 위한 치료법으로 번침을 빨리 자침하였다가 신속히 발침하는 방법을 의미한 “燔鍼劫刺”라는 문장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또한 「靈樞·官鍼」에서는 아홉 가지 침법 가운데 하나로 焮刺法을 거론하고 있는데, 번침을 자침하여 痺症을 치료하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다.

“燔鍼劫刺 其下及與急者 病在骨 焮鍼藥熨” - 「素問·調經論」

“治在燔鍼劫刺” - 「靈樞·經筋」

“九曰焮刺 焮刺者 刺燔鍼則取痺也” - 「靈樞·官鍼」

번침은 대략 침을 따뜻하게, 혹은 뜨겁게 달궈 자침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內經에서도 자침한 후에 침병(鍼柄)에 썩뜸 등으로 가온(加溫)하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침을 달궈 다음 자침하는 것인지 정확하고 자세한 시술방법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靈樞·官鍼」에서는 번침을 焮刺로 말하였는데, 이 부분 張介賓의 주석에서는 “焮刺는 자침 전에 침을 달궈 찌르는 방법으로 후세의 火鍼에 속하는 것이다. 寒痺를 치료할 때 쓴다.”<sup>258)</sup>라고 하고 있다. 즉, 焮刺法이 번침이며 후세에 와서 火鍼으로 칭하게 되었는데, 자침 전에 먼저 침을 달궈서 자침하는 방법이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素問·調經論」에서는 ‘筋에 병이 있으면 燔鍼法을, 병이骨에 있으면 焮鍼法과 藥熨法을 시행한다.’고 하여 燔鍼과 焮鍼이 같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調經論」의 燔鍼과 焮鍼에 대한 차이에 대해 張介賓은 “燔鍼은 침을 찌른 후에 불로 침체(鍼體)를 달궈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焮鍼은 먼저 불로 침을 빨갱게 달궈 다음 찌르는 것이니 단지 따뜻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寒毒이 단단히 맺힌 병증에는 이 방법이 아니면 치료되지 않는다.”<sup>259)</sup>라고 하였으며, 김달호도 “燔鍼은 자침 후에 뜸쭉을 붙여 鍼體에 열기를 가하는 방법이고, 焮鍼은 鍼을 달궈서 뜨겁게 한 후 자침하는 방법이며, 劫刺는 빨리 자침했다가 신속하게 발침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sup>260)</sup>.

이렇게 번침을 자침 전에 먼저 불로 달구는 火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자침 후에 썩뜸 등으로 加溫하는 溫鍼정도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형익의 번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몇몇 근거를 생각해보면 이형익의 번침술은 단순히 뜸을 이용한 溫鍼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형익의 번침법은 자침 전에 침체(鍼體)를 먼저 불로 벌겍게 달궈 시술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258) “謂燒鍼而刺也 卽後世火鍼之屬 取寒痺者 用之 (張介賓, 類經[下],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p. 424-425.)

259) “燔鍼者 蓋納鍼之後 以火燔之使煖也 焮鍼者 用火先赤其鍼 而後刺之 不但煖也 寒毒固結 非此不可” (張介賓, 類經[上], 서울, 대성문화사, 1982, p. 305)

260)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 p. 257.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첫째로, 단순히 온침 정도의 방법이라면 이형익의 번침술을 당시 ‘괴이한 방법’이라고까지 지칭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처음 내의원에서 이형익을 불러 오고자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할 때, 인조는 이형익의 번침술을 “괴이하고 허탄한 술법”이라 말하며 물리쳤고, 이후 인조 11년 2월 23일의 기록에도 홍문관의 상주에 이형익의 번침술을 “괴이한 방법”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형익의 번침술을 괴이하다고 한 것은 뜸을 이용한 濫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이유는 이후 기록을 보면 대사간 김광현이 이형익을 비판하면서 이형익의 번침술을 바로 화침(火鍼)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며<sup>261)</sup>, 영의정 심열 등도 번침의 해로움을 ‘金火의 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sup>262)</sup>이다. 화침은 일반적으로 자침 전에 침체(鍼體)를 불로 먼저 달구는 방법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은 이형익의 번침술이 온침 정도가 아닌 바로 화침의 시술법을 드러내는 증거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조 21년에 사간원에서 인조가 번침에 맹목적으로 의지함을 “살을 지지는 고통도 꺼리지 않으시는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으며<sup>263)</sup>, 인조 26년의 기록에는 “침을 맞을 때 옥체의 살갓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려왔다.”<sup>264)</sup>라고 표현한 것이다. 단순히 온침 정도라면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없고, 자침 전에 불로 별정계 달구는 화침법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형익의 번침술은 內經에서 언급한 쉬자법(焮刺法), 즉 자침전에 침을 먼저 불에 달궈서 시술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仁祖는 왜 燔鍼을 맞았는가?

燔鍼은 『仁祖實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임금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 치료법이다<sup>265)</sup>. 즉, 조선조 역대 임금 가운데 번침을 맞은 유일한 임금이 인조라 볼 수 있다.

번침 또는 쉬자법은 일반적으로 전술한 장개빈의 주석처럼 寒痺症<sup>266)</sup>이나 乳腺炎, 癰癤

261) “대사간 김광현(金光炫) 등이 차자를 올려 다섯 가지 일을 진술하기를 … 삼가 듣건대 또 화침(火鍼)을 맞으신다고 하니 이는 범인도 맞을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지존의 옥체이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머리털이 서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전년에 약방(藥房)에서 이형익에게 녹을 줄 것을 청하자, 전하께서 그가 괴탄하다고 물리치시므로 조아가 모두 흠양하였는데, 이 사람의 요괴한 의술이 끝내 전하를 현혹시킬 줄을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인조 11년 2월 22일)

262) “성상께서는 미명하신 이후로 …알팍한 의술로 만전의 효험을 거두시기 위하여 금화(金火)의 독을 옥체에 시술하기까지 하셨는데, 10년이 다 되어도 병근이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인조 22년 2월 4일)

263) 인조 21년 8월 9일

264) 인조 26년 8월 2일

265) 인조 이후, 孝宗代에도 2차례(효종 1년 윤11월 28일, 효종 2년 1월 24일) 번침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바가 있다. 그러나 효종이 아닌 왕대비가 번침을 맞은 기록들이다. 이 때 번침은 이형익이 아닌 다른 의관에 의해 시술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이형익은 인조의 사망으로 인해 경원부에 유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형익은 효종 2년 1월 26일에 왕대비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석방된다.

등에 쓰이는 침법인데<sup>267</sup>), 박찬국은 그 이유를 변침이 자체의 뜨거운 열기로 氣를 보하여 화농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말하였다<sup>268</sup>). 그렇다면 변침을 맞은 인조는 寒痺症이나 乳腺炎, 癰癤 등의 화농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실록의 기록에는 이런 병증의 언급이 나타나질 않는다.

인조가 변침을 맞은 목적은 寒痺症이나 화농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고, 치료가 여의치 않은 자신의 질병, 즉 고질적인 寒熱往來 증세 등을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처음 이형익에게 변침을 맞은 날의 기록에도 저주와 관련하여 변침을 맞았다고 하였고, 이후의 사관의 기록에도 같은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인조 스스로도 변침을 맞은 이유가 寒熱이 왕복하는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상이 편찮은 지 오래였는데, 궁중에서는 저주를 입은 탈이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이르러 이형익을 불러 변침(燔鍼)을 맞았다.” (인조 11년 1월 22일)

“상이 오랫동안 질병을 앓던 중 대궐 안에 마침 저주의 번고가 있자, 이형익이 사악한 빌미를 다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변침(燔鍼)을 놓아드렸는데, 이것이 약간 효과가 있어 마침내 총애를 받아서 상사(賞賜)한 것을 이루 다 기록할 수도 없었다.”(인조 23년 6월 12일)

“변침은 배가 부른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열(寒熱)이 반복하는 증상을 다스리는 것이라 하였다.” (인조 26년 8월 2일)

仁祖의 질병을 살펴보면 인조가 변침을 맞은 배경에 대해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69</sup>). 實錄에 나타난 질병관련 기록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보면, 인조 4년(32세) 생모인 啓運宮 具氏가 사망하여 인조는 정신적인 충격과 비정상적인 식사로 인해 원기가 손상되어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검어지며 목소리까지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인조 10년(38세)부터는 질병관련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인목대비의 거상 과정에

266) 寒痺: 風寒濕의 邪氣가 팔다리의 뼈마디와 經絡에 침습하여 생기는데 그 중에서 寒邪가 성한 痺症을 말한다. 뼈마디가 몹시 아프고 아픈 곳이 일정하며 차게 하면 더 아프고 덥게 하면 경해지며 때로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한다. 아픈 부위의 살갓은 차고 창백하다. 류머티즘성 관절염에서 볼 수 있다. (동의학사전, p. 1131.)

267) 동의학사전, p. 565.

268) “燔鍼은 주로 痺證이나 악성종양 같은 類에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면 왜 燔鍼을 쓰는지 생각하여 보자. 痺症은 寒이나 濕이 성하여 五行의 순환이 어려워 경혈이 陷下된 경우에 燔鍼을 써야 할 것이다. 악성종양은 빨리 화농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화종이 되지 않는 것은 대체로 기가 虛한 경우이다. 燔鍼은 그 자체가 뜨거워서 氣를 보하므로 화농을 촉진한다고 보아야 한다.”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집문당, 2005, p. 998.)

269) 인조의 질병에 관한 내용은 “조선시대 仁祖의 질병에 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차후에 별도로 발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간략히 그 중요한 내용만 언급한다.

이전에 생모를 잃었을 때와는 달리 더 심각한 증세를 드러낸다. 당시 인조는 ‘안색이 검고 몸이 야위었으며 땀이 나고 오한증세가 있으면서 한쪽이 마비되는 증세’를 호소한다. 藥房과 대신들은 內傷에 外感이 겹친 것으로 보았는데, 주된 병증의 원인은 內傷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 내상은 脾胃의 병으로 말한다. 인조는 이런 자신의 병세를 10월에 발생한 대궐내의 저주사건<sup>270)</sup>과 관련한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듬해 1월부터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기 시작한다<sup>271)</sup>.

인조가 호소하고 있는 가장 빈번한 병증은 ‘寒熱往來’ 증세로 생각된다. 인조 23년 史官의 기록에도 “상이 매양 봄 가을로 寒熱 증세를 앓아왔는데…”라고 하였으며, 인조 자신도 스스로 ‘열이 가끔 위로 치밀어 가슴이 답답하더니’, 혹은 ‘열이 치솟아 귀가 막히는’ 등등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寒熱往來 증상은 少陽病 半表半裏症의 대표적 증상이라 볼 수 있는데, 인조의 寒熱往來는 傷寒病보다는 잡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內傷인 脾胃의 손상으로 氣血이 모두 허해진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氣의 울체로 인해 內火가 발생하여 나타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인조는 反正을 통해 신하들의 힘에 의해 집권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전대의 다른 임금들보다 권력의 토대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권력기반의 취약성은 줄곧 권신들의 눈치를 봐야만 했었고, 또 다른 반정을 염려해야만 했다. 이런 상황 하에 자신의 질병을 저주와 관련짓기도 하는 의심 많은 성격이 형성되기도 하였고, 필연적으로 氣의 鬱滯를 가져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괄의 난이나 두 차례에 걸친 호란 등으로 인해서도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중압감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적으로 정신적 중압감으로 인한 氣의 鬱滯, 그리고 脾胃 손상으로 인한 氣血俱虛가 함께 작용하여 한열왕래 증상 등을 드러냈던 것이고, 이것이 인조의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으며 사망에 이르는 주요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조는 이러한 자신이 병세를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믿었고, 이형익의 번침을 통해 치유되고자 한 것이다.

## V. 맺는 말

朝鮮中期는 鍼灸學이 발달한 시대로 이야기 된다. 開國初부터 鍼灸는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특히 이 시기에 들어와 鍼醫가 藥醫와 구분되어 인식되기 시작한

270) 인조 10년 10월 23일에 대신들이 “궁중에 저주하는 번고가 있어 흉측한 물건이 낭자하다고 합니다. 엄히 국문하여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소서.”라고 청하자 궁인 귀희와 옥지, 그리고 귀희의 종 덕개를 신문하여 사사하고 처형한 기록이 나온다.

271) 인조의 질병과 번침술에 관한 연구는 이미 발표된 바가 있는데, 주로 인조에게 빈번하게 시행되었던 번침술(燔鍼術)을 저주(詛呪)와 관련하여 기술하고 있다. (김인숙, 인조의 질병과 번침술,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13권 2호, 2004, p. 198-218.)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王朝實錄』에서도 宣祖 19년 ‘鍼醫’가 최초로 거론된 이후 여러 鍼醫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宣祖에서 仁祖代까지 鍼醫로 거론된 인물은 23명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鍼灸經驗方』을 저술한 許任은 宣祖와 光海君代에, 李馨益은 仁祖代에 가장 빈번한 출현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鍼醫들이 藥醫와 구별되고 그 활약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중기 등의 피부질환 치료, 전쟁을 통한 外傷의 성행, 경제가 어려운 상황 하에 鍼灸가 갖은 편의성과 경제성 등으로 인해 鍼醫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역할증대가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중기 鍼醫들은 특별한 총애와 신임을 받아 堂上官의 品階에 오르기도 하고(許任·南嶸), 扈從功臣에 錄動되기도 하였으며(許任), 말(馬)이나 활 등의 포상을 하사받기도(許任·柳大鳴·安彦吉·李濟仁·裒以龍·鄭大鵬·李秀民·李大儉) 하였다. 아울러 치료의 공로로 지방관에 진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필요시 불러올려 침을 맞고자 가까운 경기 지역에 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사대부들이 기술학 연구에 참여하는 등 사회구조의 유연성을 유지하였으나, 조선중기에 들어와서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전과 달리 폐쇄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鍼醫들의 지방관 진출시 사대부 관료들의 거센 반발과 탄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의 의학을 비롯한 기술직 천시의 풍조와 신분의 차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중기에 활동했던 鍼醫들의 신분은 3명의 士族출신도 있지만 庶孽 출신으로도 3명이 거론되고 있어, 사대부 계열에 속하지 못한 계층이 점차 기술직을 담당하면서 中人계층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허임은 官奴와 私婢 사이의 庶孽출신으로 그 賤視가 더욱 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전반적인 폐쇄성과 경직성에 비해 당시 임금들이나 內醫院에서는 비교적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醫員取材를 통한 醫官이 아니라도 민간의 의원 가운데 특별한 의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종종 등용되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형익은 鍼術로 이름이 나 內醫院의 천거로 의관에 제수되는데, 인조의 특별한 신임을 얻어 죽기 전까지 약 16년간 병 치료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이형익의 치료법은 거의 燔鍼術이었는데, 燔鍼은 『黃帝內經』에서부터 나타나는 전통적 침법의 하나이다. 이형익의 변침은 실록의 기록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內經의 焮刺法, 즉 火鍼을 말하는 것으로 자침 전에 鍼體를 먼저 불로 달궈 시술한 것으로 추측된다.

인조의 근원적 질병은 脾胃病이었는데, 脾胃의 손상으로 인한 氣血俱虛와 정신적 중압감 등으로 인한 氣의 鬱滯가 함께 작용하여 寒熱往來 등의 증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인조는 자신의 이러한 병증을 저주와 관련된 것으로 믿어 이형익의 변침에 의지하여 치유하고자 하였다.

## [參考文獻 및 資料]

1. 朝鮮王朝實錄
2. 司馬榜目
3. 張介賓, 類經, 서울, 대성문화사, 1982.
4. 張杲, 醫說[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서울, 대성문화사, 1995.
5.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81.
6. 孫弘烈,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서울, 修書院, 1988.
7.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집문당, 2005.
8. 金達鎬, 注解補注黃帝內經素問, 서울, 의성당, 2001.
9. 金洪均·朴贊國, 朝鮮中期 醫學의 系統에 관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권5, 1991.
10. 朴贊國, 東洋醫學 眞面目 못 보여줬다, 大韓原典醫史學會, 大韓原典醫史學會誌, 권5, 1991.
11. 洪性鳳,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韓國人口學會, 韓國人口學會誌, 14권 1호, 1991.
12. 朴文鉉, 許任 鍼灸經驗方 研究, 韓國醫史學會, 韓國醫史學會誌, 15권 1호, 2002.
13. 金인숙, 仁祖의 질병과 燔鍼術,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13권 2호, 2004.
14.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서울, 一志社, 2000.
15. 韓永愚, 조선후기 中人에 대하여, 韓國學報, 45집, 1986.
16. 金良洙, 조선시대 醫員實態와 지방관 진출, 東方學志, 104권, 1999.
17. 李圭根, 朝鮮時代 醫療機構와 醫官, 東方學志, 104권, 1999.
18. 東醫學辭典, 서울, 까치, 1990.
19. 張大千, 中國鍼灸大辭典, 北京, 北京體育學院出版, 1988.
20.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法制處, 1979.